

시민드림:

난민법 개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편지

시민드림:

난민법 개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편지

2018년 여름, 제주 예멘난민이슈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난민의 존재와 상황을 알게 됐고, 자신이 살고 있던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난민에게 쏟아졌던 우려와 불안, 적대의 화살은 사실 난민과는 관계없이 한국사회가 이미 살고 있던 현실이었습니다.

찬성과 반대로 나눌 수 없는 이슈였음에도 난민 이슈는 그렇게 구분 지어졌습니다. 반대를 넘어 혐오의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물결 속에서도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하나요?”

이 질문은 “왜 난민을 보호해야 하나요?”라는 질문과 맥이 같았습니다. 질문하셨던 분들께 활동가로서 어떤 대답을 해야 했었는지, 어떤 대답을 해야 할 지 아직도 고민스럽습니다. 어떤 때는 이것이 과연 설득이나 논리, 팩트의 문제일까 싶고, 결국

5 ‘자기 삶에서 난민이라는 상황과 공명하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는가’가 누군가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답답해하며 털어놓는 이야기 속에 그만의 답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단지 그 답이 ‘맞는’ 것인지 또는 ‘객관적’인지를 확신하지 못해 가슴 속에 담아 두었을 뿐 - 정말이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대답들을 들을 때 마다, 오히려 제가 내놓는 통계나 사실관계, 논리 등이 무색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편지쓰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책에 담긴 서른 편의 편지는 시민들이 한국사회에 직접 내놓는 난민 이슈에 대한 대답이자, 한국의 난민보호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치적인 요구이기도 합니다. 서른 명의 시민분들은 한 달간 매일 법무부 장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미 25년 넘게 난민제도를 운영해왔으면서도 난민이 어떤 상황에 처한 사람들인지 제대로 설명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던 법무부에, 예멘 난민 500명보다 훨씬 많은 난민이 있어왔음에도 구성원들의 불안과 의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고 오히려 불안을 키우고 이용했던 법무부에, 제도운영의 주체이면서도 ‘남용적 신청자’를 가장 큰 이슈로 삼고 있는 법무부에, “Go back to your country” 난민 심사 중에 난민신청자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법무부에, 2018년 여름의 이슈를 틈타 난민의 권리를 대폭 제한하는 법안을 당당히 준비하고 있는 법무부에, 그리고 그를 대표하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용기 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 주신 분들께 서문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대답이 또 다른 용기 있는 대답을 낳고, 이런 말들이 한국사회에 난민의 자리를 만들었음을, 만들어 갈 것임을 압니다.

받는 이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이었지만 이 책을 펼친 당신께도 어느 한 편이, 한 구절이 목직한 울림으로 와 닿는 순간이 있기를, 그래서 당신만의 편지를 쓰게 되기를 바라며 편지를 엮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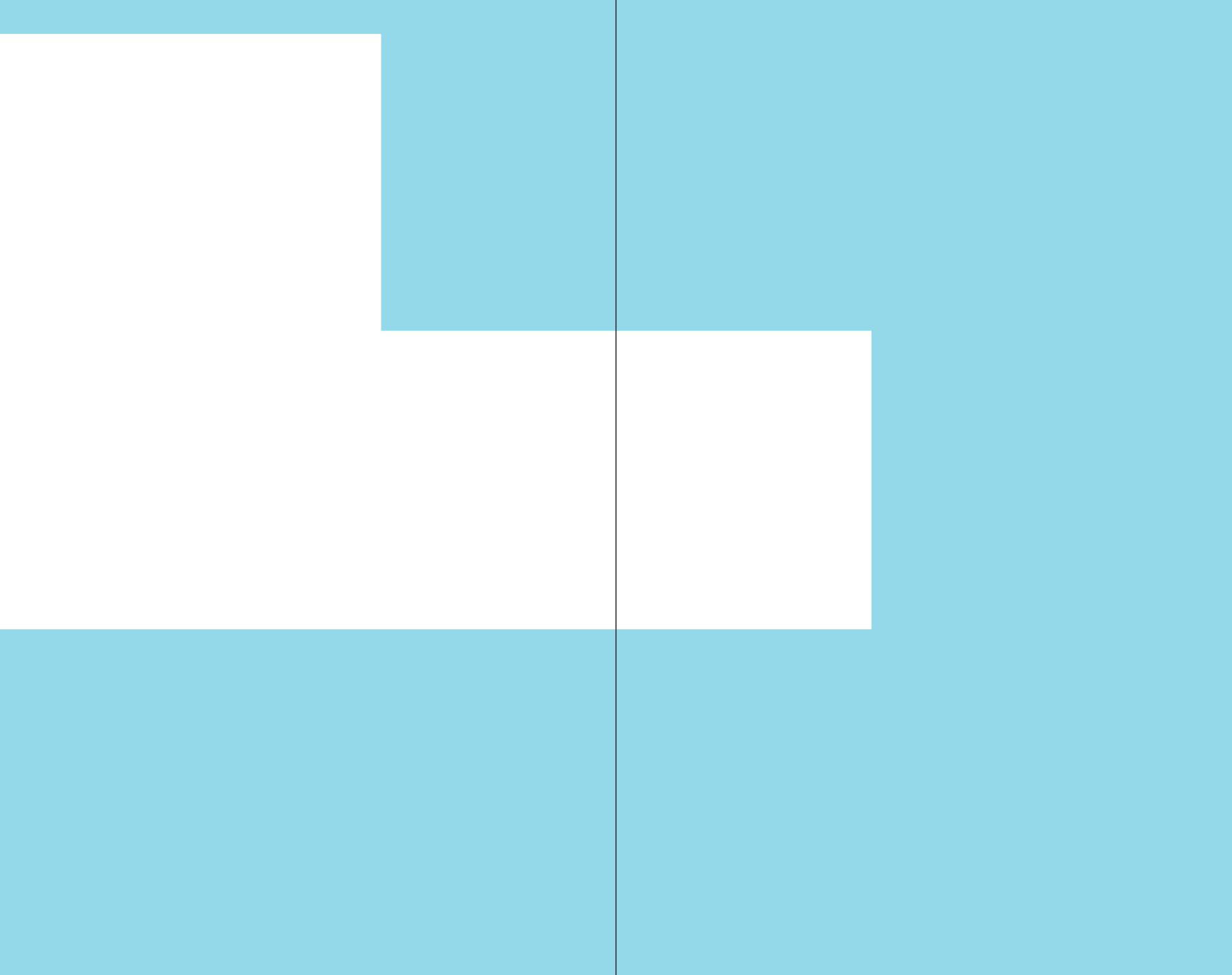
법무부의 답변은 맨 마지막에 실었습니다.¹ 난민인권센터는 이 캠페인을 난민법 개정에 깊이 있는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로 삼고,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과 연대하여 더 나은 정책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 수고하신 노공, 소나무, 허니 활동가. 멀리서도 격려를 아끼지 않은 그린 활동가. 운동의 발자국을 기록하여 남기는데 도움을 주신 まっくろくろすけ님께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이슬(난민인권센터)

1 편지 발송 이후 모든 편지에 대한 법무부의 일괄적인 답변이 각각 도착했습니다. 기존에 법무부가 난민에 대해 가지고 있던 입장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은 진부한 내용으로, 난민법 개악에 대한 입장이나 구체적인 대안을 담은 답변이 아님이 크게 아쉽습니다. 이는 여전히 법무부의 난민정책이 애매모호한 말 속에 숨어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난민인권센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개악시도에 대한 반대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Bit.ly/난민법개악반대](https://bit.ly/난민법개악반대)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4	시민들의 편지를 출간하며	이슬	80	25번째 편지	김지유
12	1번째 편지	김지은	83	26번째 편지	임한주
14	2번째 편지	김규환	87	27번째 편지	우지원
18	3번째 편지	문아영	89	28번째 편지	심아정
20	4번째 편지	이다은	94	29번째 편지	조성수
22	5번째 편지	이광문	97	30번째 편지	박진우
25	6번째 편지	박경주	160	난민법 개악 해설	이슬
28	7번째 편지	김규리	178	한국의 난민법은 어떻게 가고 있을까	김연주
31	8번째 편지	김운정			
33	9번째 편지	이다현			
35	10번째 편지	이상아			
40	11번째 편지	전예진			
42	12번째 편지	한나현			
44	13번째 편지	강이슬			
46	14번째 편지	홍세화			
52	15번째 편지	이민혜			
55	16번째 편지	해리			
56	17번째 편지	황정인			
59	18번째 편지	편세정			
63	19번째 편지	현민			
65	20번째 편지	최수근			
68	21번째 편지	김세경			
70	22번째 편지	김유찬			
72	23번째 편지	최하늬			
74	24번째 편지	신지영			



1번째 편지

김지은

12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

참으로 사람다운 삶은 그냥 존재함의 차원에 만족하는 조용한 삶이 아니다.

사람답게 사는 삶은 타자에 눈뜨고 거듭 깨어나는 삶이다.

철학자 레비나스의 말을 인용하며 편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20여 년 동안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살고 있는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 몇 자 적으려고 해요.

제가 학생일 때, 기회가 닿아 유럽에서 잠시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공부를 하러 갔었는데,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접하는 게 즐거웠지만 동시에 가족도 친구도 없는 곳에서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고 외롭기도 했어요. 외국인으로 외국에서 살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았고, 한국에서는 혼자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잘 알지 못해서 허둥지둥한 적이 참 많았어요. 한국에서 꽤 오랫동안 공부하고 있음에도 언어가 익숙하지 못해서 잘 못 알아듣고 다시 묻는 일도,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상대방이 잘 이해하지 못해 더듬거리며 다시 말하는 일도 자주 있었습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게 인상적이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13 동네의 단골 빵집에서 빵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해서 얼굴이 빨개졌던 순간에 웃으며 빵의 정확한 발음을 알려주시던 빵집 아주머니, 여행을 하던 중 미리 찾아두었던 노선과 다른 버스 노선에 당황할 때, 말이 서툰 저를 대신해서 기사님께 방향과 목적지를 확인해주셨던 아주머니, 낯선 곳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자기 것처럼 나서서 길을 찾아주셨던 아주머니, 우체국에서 편지를 부칠 때 어려워하는 제게 편지 부치는 방법을 재차 설명해주시던 직원 분, 은행 업무를 볼 때 항상 알아듣기 쉽게 천천히, 정확하게 발음해주셨던 직원 분까지. 동양의 외국인인 제가 뺨은 손에 주어진 친절과 도움의 손길 들을 저는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이런 친절과 환대가 한국에 처음 오는 난민들에게도 주어지길 바랍니다. 낯선 땅에, 모르는 언어에, 아는 이 하나 없는 곳에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 일상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일일 거라 생각합니다. 의지할 곳 없는 난민들에게 이미 가혹한 난민법을 더 가혹하게 만드는 개정은 도움을 위해 뺨은 난민들의 손을 더욱 세게 뿌리치는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부디 다시 생각해주세요. 이곳, 한국 땅에 처음 와 난민들이 겪게 되는 실제적인 어려움들을 듣고 고려해주세요. 저와 장관님이 아침을 맞이해 출근하고, 식사를 하고, 가족과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밤이 오면 잠을 자듯 난민도 우리와 같은 일상을 나누던 사람입니다. 지금의 개정안에 진정 사람다운 삶에 대한 고민이 녹아 있는지 다시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장관님 곁에 도움의 손을 뻗는 난민들이 있습니다. 그 손들을 외면하지 마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신 기다리겠습니다.

2019년 4월 8일

시민 김지은 드림

박상기 장관님께.

지난 2월 3일 미국 프로미식축구 챔피언 결정전에 해당하는 슈퍼볼 대회에 캐나다 최대 노조인 유니포(Unifor)는 GM의 공장 폐쇄를 비난하는 32초짜리 광고 만듭니다.

광고는 “무엇이 우리를 캐나다인으로 만드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어 “어려움에 처한 친구나 이웃을 지원하는 것,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기꺼이 돕는 행동이 바로 캐나다인의 정체성”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캐나다는 GM에 약 12조원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GM은 공장 폐쇄로 자금 지원에 대한 캐나다의 손길에 답을 했습니다.

광고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GM, 너희는 우리의 은혜를 잊어버렸지만,
우리는 결코 너희의 탐욕을 잊지 않겠다”

이른바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라고 불리워지던 당시 우리 사회의 민낯에 대한 장면들입니다. 몇 가지 단어들로 정리 하면 이렇습니다. 난민협오, 이슬람협오, 세금낭비, 자국민우선... 그리고 그 더러운 협오를 자양분으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몇몇 얼굴들이 하나하나 스쳤습니다.

“난민법을 폐지함으로써 난민인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난민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제안이유를 댔습니다. 난민법 폐지와 동시에 다른 법에서도 ‘난민’이 들어간 조항을 삭제하자는 제안으로 대표발의 중입니다.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난민협약 가입 142개국 중 난민 협약을 탈퇴한 국가는 단 한곳도 없습니다. 어찌면 최초의 탈퇴국이라는 영광이 대한민국이 될지도 모릅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난민협약이 난민신청자를 보호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럼 도대체 난민협약은 누구 보호하기 위한 협약일까요? 인종차별과 혐오에 찢어 살면서도 월드컵도 올림픽도 아시안게임도 개최하고 싶은 인지부조화 된 자아분열자들을 위한 보호책일까요?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난민 심사를 위한 사전 난민심사를 하겠다는 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심사를 위한 사전 심사를 만들겠다는 발상. 턱없이 부족한 난민심사 인력과 구조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입법 발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역시 “자국민 중심주의 중요, 난민 반대한다.”라면서 개악에 열일 중입니다.

지난해 있었던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폭행 사건을 기억 하실겁니다. 불법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해명도 유학생인지 몰랐다는 해명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후속 기사를 찾아보니 관련자 전원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니다. 장관님 요즘은요 길고양이 떠돌이 개를 때려도 처벌받는 세상입니다.

최근에 법무부가 난민법과 출입국관리법을 개악한다는 이야길 들었습니다. 내용에 대해선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한번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난민심사 전 난민심사제도로 신청 장벽을 높이고, 강제송환은 더 쉽고 간단하게 하는 출입국관리법을 동시에 개악 추진. 또한 난민신청 접수 장소를 대폭으로 축소, 출국하면 신청 철회로 간주, 면접 2회 불출석 시 난민신청 철회로 간주하는 등 신청 절차를 더 불편하게 하는 일련의 개악입니다. 지금이 박근혜 정부인지 문재인정부인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박근혜 정부는 이런 식의 개악은 없었습니다. 또한 아시아 최초의 난민법 발의국의 영예와 대표발의자는 전 새누리당 5선의원인 황우여 전의원었습니다.

법이라는 한자의 해제를 보면 논이나 밭에 물길을 내고 이어주는 것이라 배운 기억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입법부와 사법부가 진행하는 법 개정은 한마디로 개악입니다.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법정신일 수 없습니다.

장관님 올해는 우리가 자주민이고 독립국인임을 선언한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난민들은 여러 형태의 차별과 외압으로부터 자주민으로 독립을 선언한 사람들입니다. 100년 전에도 우리의 자주와 독립을 위해 대한민국인이 아니 다른 나라의 이웃 시민들이 우리의 독립을 위해 우리를 보호하고 함께 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식민지 시절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국전쟁 당시 기꺼이 남의 나라 전쟁에 참전했던 또 피난의 행렬에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던 다른 나라 이웃시민들을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우리가 국제 사회로부터 이웃나라 시민들로부터 받았던

대한민국 너희는 우리의 은혜를 잊었겠지만
우리는 너희의 탐욕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장관님께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대한민국인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주민이고 독립국인임을 증명하고
같은 이유로 싸우는 이들과의 보호와 연대를 통해
우리 역시 그 과정을 거쳐 정당하게 여기 서 당신들의 손을
잡겠다고 말 할 수 있습니까?

2019년 4월 9일
시민 김규환드림

우리는 환대에 의해 사회에 들어가며 사람이 된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리/장소를 갖는다는 것이다.
환대는 ‘자리’를 주는 행위이다.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中

박상기 법무부장관님, 안녕하세요.
저는 평화교육단체 피스모모에서 활동하며 난민인권센터
회원이기도 한, 한 사람의 시민, 문아영이라고 합니다.

저를 소개하며 잠시 멈춰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시민”이라는 단어를 쓰며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거든요.
“나는 시민인가? 그러한가?”

저의 이 머뭇거림 속에는 조금 더 긴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어찌하여 지금, 여기의 나는 시민이고 누군가는 시민이
아닌 것인가?”

누구도 태어나기를 스스로 선택하지 않습니다.태어날 국가를,
부모를 선택하는 이도 없습니다.

삶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거나, 우리는 그렇게 삶에
던져지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내던져진 그 순간, 그 이의 자리를

청와대 앞에서 단식하시던 난민분들의 모습,
제주의 거리위에서 잠을 청하시던 난민분들의 모습,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되었던 난민분들과
46번 게이트에서 지내고 있는 네 아이와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며
저는 그 위에 겹쳐지는 저의 얼굴을 봅니다.

난민에 대한 혐오, “혐오할 권리”가 마치 존재하는 양, 확신에
찬 얼굴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던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과연, 그들이 배척하고자 하는 이는 누구이며,
배척하려는 이들로부터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공교육도, 법과 제도도, 혐오의 물결 곁에서 침묵하는 모습을
보며 촛불의 힘은 “단일한 우리”라 믿어지는, 그 실제없는
소속감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인지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무부장관님. 2019년 바로 지금 이 시기에 그 자리에 계시게 된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저는 법의 할 일이 부당한 폭력과 억압으로 ‘자리’를 잃은 이에게
‘자리를 돌려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님의 고민과
성찰 속에서 “혐오를 정당화하지 않는 선택”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지금, 여기 “법무부장관”의 자리에서 꼭 하셔야 하는 일을 두려움
없이 감당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2019년 4월 10일
문아영 드림

박상기 장관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다은이라고 합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해요.

작년부터 한반도에는 평화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가끔씩 긴장의 흐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마음에 담아두었던 평화의 기대들을 조금씩 펼쳐보고 꿈꾸며 기대하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평화가 깨어진 곳은 더욱 춥고 어둡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사회 각처에서 드러나는 혐오와 차별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에는 제주에맨난민 이슈를 시작으로 난민들이 한국사회에 ‘드러나며’ 화두가 되었던 해였습니다.

하지만 난민이슈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늘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외국에서 2년 정도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업무로 출국했지만 언제나 비자를 연장하려 갈 때는 긴장이 있었습니다. 간단한 절차들이 저의 ‘안전’과 ‘존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은연중에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 아닌 보금자리를

21 떠난, 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난민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난민들도 특별한 위기의 상황에 처한, 우리 곁의 ‘사람’입니다.

이제 ‘드러난’ 난민들은 우리에게 ‘낯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회에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 혐오와 배제가 아닌 인권, 생명존중, 평화와 같은 소중한 가치들이 한국사회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바른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전쟁을 겪은 우리는 그 누구보다 생명과 평화가 소중한 것임을 알고 그것을 이뤄가야 하는, 그리고 이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나그네 되었던 때를 기억하며 그때 누군가 잡아주었던 손을 이제 다른 이에게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우리의 평화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진정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평화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용기있는 결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11일

이다은 드림

우리나라의, 그리고 우리민족의 법무부 장관이신 박상기 장관님.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우리민족을 살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편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난민의 정부였습니다. 100년 전 언제 올지도 모르는 해방을 기다리며 타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중국은 이를 승인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폭력으로 민족을 수탈한 이들은 상하이의 우리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대한의 독립은 바로 우리가 받았던 지원을 가장 값지게 높이는 일이자 세계 평화의 상징이 되게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전쟁 난민의 나라였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해외의 원조를 그야말로 생명이었습니다. 삶의 터를 빼앗겨 힘이 없어 다른 나라의 돈을 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우리의 과거가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난 것이 그 원조를 가장 값어치 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조가 세상을 빛나게 하는 인류의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금도 브로커에 의한 가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입니다. 그러나 압제 속에서 신음하는 민족의 처지를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은, 사람은 가짜가 될 수 없음을 알게 했습니다. 브로커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면 이미 이탈주민이 될 일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행정상의 미등록이 기준이 아니라,

23 사람의 존귀함 앞에 함께할 수 있게 하는 행정의 힘을 꽃피웠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법은 그 나라 사람들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창입니다. 지난 9일부터 또다시 난민에 대해 '브로커', '가짜', '허위', '체류수단' 등으로 표현하는 기사들이 하나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무장단체, 게으른 기회주의자란 이름으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지워졌을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역사 앞에서 법이 바로 서 있을 수 있다면 우리의 기준은 지금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상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과 같은 삶을 유지하려면 지구가 3.3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계 경제 속에서 어느새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미래세대의 자원을 끌어와 소비하며 삶을 누리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계 경제 속에서 이제 난민은 이벤트와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전 세계 난민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 탓이 아니라, 일제가 우리에게 이득을 취해왔듯, 지금의 세계 경제 속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나라가 어떤 난민법을 선택할 것인지는 이제 세계의 역사 속에서 시험의 무대 위에 오르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 앞에서 민족의 비극에 원조를 해준 세계와 함께 오히려 인류의 가능성을 드높인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난민이 된 이들을 위한 지원이 인간의 존엄을 세우고 이는 다시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힘으로 선순환 된다는 산 증거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법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난민 역사 속에서 경험한 세계의 응답은 이미 갖춰진 사람, 입맛에 맞는 사람을 가려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자리로 와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이 땅에서도 다시 또 다른 해방과 사람의 힘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 일이야말로 민족의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의 영광을 수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기 나라를 떠나 그렇게 밖에 할 수 밖에 없었던 이들의 편에 서주는 법을 통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 민족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예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에 많은 것을 갖게 되어 그것을 쥐고 있으려는 두려움에 대한 응답이 아닌, 역사 속에서 빛날 난민법을 선택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살아서 함께 살리는 법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우리다울 수 있는 법의 모습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 4월 12일
이광문 드림

25 6번째 편지

박경주

박상기 법무부장관께

지금 저를 둘러싼 어떠한 법 하나가 없어지거나 혹은 새로 생겨난다고 해도, 제 삶은 결코 송두리째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저는 시민/국민으로서 ‘어느 정도’의 ‘현상될 권리’와 저를 재현/대표해줄 ‘정치체(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그리 크지는 않더라도) 한곳에 정주하며 축적한 사회/문화/경제자본은 법의 영향력에도 삶이 덜 ‘휩쓸리도록’ 하는 기반이 되어 줄 것입니다(물론 이를 맹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국민과 난민사이’의 거리는 절대 멀다고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관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난민이라는 지위/조건에 놓인 이들은 다릅니다. “떠나왔지만 돌아갈 수 없다는” 상황/존재조건에 따라 그들에게는 법의 영향력을 막거나 버텨낼 ‘재간’이 없기에(더 정확히는 제가 국민으로서 갖고 있는 ‘기반’을 한국사회는 그들에게 절대 허락하지 않기에) 법은 그들의 삶/생명에 대하여 “살리거나 죽이는” 혹은 “죽게 내버려두거나 (잘)살게 하지 않는” 등의 지대한 힘으로써 관철됩니다. 그리고 이와 꼭 같은 이유로 법은 그들의 삶의 존속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그 무엇보다) 절실한 그 무엇이 되는 것이겠지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난민법은 이러한 난민들의

26 삶/지위를 보장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독소/예외조항’(예: 44조)들은 난민법/제도 전체를 갈아엎을 만큼의 큰 영향을 끼치며, 난민(비호권을 주장하는 이)들의 삶을 (이미 충분히)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정(改正)해도 모자랄 판에 개악(改惡)한다는 법무부와 몇몇 국회의원들의 입장은 정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와 장관은 정녕 다른 한국을 살고-감각하고 있는 걸까요?

작년 몇몇의 난민분들에 의해 시작된 단식농성을 장관도 익히 아실 겁니다. 저도 3번 정도 농성장을 찾아가보았습니다. 지금도 잊히지 않는 장면 중 하나는 만삭의 몸으로 출산 당일까지 목소리를 이어가던 한 난민분의 모습입니다. 그는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며 목소리를 내고 있었을까요? 이와 함께 제가 읽거나, 들었던 난민분들의 말들 중 절실히 떠오르는 문장들을 장관께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묻고 싶습니다.

“한국(사회)에서 난민들은 법을 어기면서 생(명)을 이어가거나 법을 지키면서 (굶어)죽어가는, 두 상황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내 발이 마치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으려는 의지’가 많은 경우 불법이 되어버리는/불법과 공모하지 않고선 삶이 불가능해져버리는, 힘겹게 도착한 비호국에서조차 안전한 ‘삶 자리’를 갖지 못하는 이분들에게 법무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법무부장관으로서 이분들의 삶에 대해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작년 한해를 지나며, 장관께서도 많은 고민과 걱정 때로는 ‘위기/두려움’을 겪으셨을 줄로 압니다. ‘복수의 국민들’안에서 ‘난민반대’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나타났으니깐요. 그러나 복수의 국민들안에는 도리어 난민에 대한 정부의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태도를 문제

27 삼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마시고, ‘함께 살아감cohabitation’을 더 설득해주시고 장관으로서 위험부담을 지더라도 더 대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난민법을 지금보다 더 나은 난민들의 삶을 위해 ‘개정’해주시길 시민으로서 명령하며 부탁드립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2019년 4월 13일

오키나와 読谷村에서

박경주 드림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에서 국제개발협력학을 전공하고 있는 김규리입니다.

난민법·출입국관리법 개정과 관련하여 제 의견을 전하고자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난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학교 도서관에서 장 지글러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를 읽었는데, 처음 읽었을 때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자연도태설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자연도태설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지구의 인구 밀도를 기근이 적당히 조절한다는 말이에요. 자연이 스스로 과잉 생물을 주기적으로 제거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외면받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국제사회의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서울에 있는 난민인권센터에서 2주간 인턴십을 했어요. 2주가 짧다면 짧은 시간이겠지만, 그 시간은 제가 현재의 전공을 선택한 이유가 되었고, 편견을 깬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동안 국내에 있는 수많은 난민의 이야기를 접했고, 실제로

지금은 매우 부끄럽지만, 저도 한 때 다르다는 이유로 난민을 비롯한 국내에 있는 외국인을 싫어할 때가 있었어요.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저 우리 사회에 스며드는 것이 싫어서 색안경을 끼고 쳐다봤었어요. 그런 시선을 없애주던 것이 난센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의 제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난민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밝은 모습이었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 때 느꼈어요. 아, 이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말이죠. 더 이상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난민의 경우를 접하면서, 그에 대해 배우면서 강제송환이나 통역 과정에서의 오역 등의 사건을 접했어요. 난민은 인종·정치·종교적 등의 이유로 자국의 박해나 내전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타지로 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한국으로 오는 것이 그들에게는 한 줄기 빛이었을 거예요. 그 작은 희망을 갖고 온 사람들에게 차갑게 대하고, 강제로 본국으로 송환하는 상황을 접하며 우리나라가 따스한 환대의 나라는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먼 나라 한국까지 오는 것이 삶의 희망이었을 그들에게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더 그들을 힘들게 하는 법이 발의되다니요. 그들은 이제 어디에 의지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장관님, 시민의 한 사람으로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난민에게 보다 더 따스한 환대를 하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그리 되긴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함께 한다면 조금씩 바뀌어 나갈 거란 것을 압니다. 다시금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권리를 생각하며 진정으로 법이 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불어 그들의 손을 뿌리치지 말아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좋은 소식이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 :)

30

2019년 4월 14일
김규리 드림

31

8번째 편지

김윤정

안녕하세요 법무부 장관님,

한국 시민들도 생계 및 학업, 친지방문 등 여러 이유로 인하여 시민권이 없는 환경에 노출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 본인의 인종이나 성별, 언어 등 여러 요소가 어떤 피해를 가져오는지도 깨닫습니다. 저 역시 한국이 아닌 곳들에 머무르며 시민권의 유무가 사람을 얼마나 일상을 억죄는지 배웠고, 한국에 머무를 때 마다 제가 인지 못한 여러 특혜를 누리고 있던 사실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률들이 어떻게 변화해나가나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사회문화적 자본을 버리고 다른 곳에서 살겠다는 결정은 내리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은 스스로의 복잡한 사정들과 조건들은 저울질 합니다. 그러나 난민신청을 하게 되는 사람들의 경우, 떠나야만 한단 사실 외의 조건들을 저울질할 기회가 없습니다.

시민권이 없을 때 정치적 발언권이 어떻게 사라지고 권리의 범위는 얼마나 축소 되는지 그동안 경험했기에 현재 대한민국 난민법이 개정되는 방향이 크게 신경 쓰이며 걱정이 됩니다. 제가 경험한 타지생활 이상으로 취약하고 위태로우며 부조리한 상황에 여러 난민(신청자이든, 인정자이든)들이 현재 처해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만의 상황은 아니나, 국내 난민법이 유독 난민신청자들에게 가혹하게 집행되고 있으며 출입국을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너무 많은 재량을 가지고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2018년도에 일어난 여러 현상들이나 난민에 대한 혐오감들이, 정말 한국 땅에 난민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와 보호를 찾아 온 사람들의 선택이나 행동들과 무관하다는 것을 장관님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주민들에 대한 적대감과 인종주의를 활용하고, 난민법을 개정하여 마치 한국의 다른 사회적 문화가 사라지는 것 처럼 포장되는걸 원치 않습니다. (한국의 방산 산업이 수출을 통해 성장하는 것과 세계의 내전 및 독재가 무관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을 찾은 난민들을 가해자로 규정하는건 모순적이기까지 합니다.)

난민법이 바뀌어야 한다면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폭력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새로운 폭력을 얻는 방향으로 움직여선 안됩니다.

2019년 4월 15일
김윤정 드림

9번째 편지

이다현

법무부 장관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단지 난민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편지를 드립니다. 난민에 대한 지나친 온정주의에서 무작정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난민법 개정의 이면에 “난민에 대한 보호” 보다 “신속한 난민 처리”라는 의도가 없길 바랄 뿐입니다.

한국은 난민협약 가입국이며 어느 정도의 난민을 수용할 여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난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유로 난민들의 난민 인정 심사 권한까지도 제한해 버린다고 과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난민 심사 자체를 막고, 강제 송환으로 대한민국 땅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면 한국이 “난민문제”에서 자유로워 질까요?

저는 오히려 난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 한국의 난민법과 심사절차, 난민으로 인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예측과 전달이야말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하는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난민 인정을 받은 난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오히려 향후 한국사회에서조차 소외 받고 생존의 위기에 마주하게 된 난민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성이자, 이제 막 사회로 나와 직업을 찾는

구직자이자, 향후 50년은 더 한국사회에서 살아갈 시민입니다. 즉, 34
난민 혐오 주장에 따른 난민에 의한 테러, 범죄, 일자리부족문제에
가장 취약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난민 보호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만나온
난민분들은 제 주변 외국인친구들과 다름이 없었고,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들게, 기본적인 혜택조차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위상과 권위를 누리려면 그에
따른 책임 또한 마땅히 져야 합니다.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물질적인 발전 수준과 함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의식수준과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의식 또한 높아져야 하고, 이것이
바로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난민법 개정이 난민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조치, 난민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통해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한국의 책임을 다하려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16일
이다현 드림

35 10번째 편지

이상아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코트디부아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살고 지금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이상아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서부에 위치한 코트디부아르(Cote d'Ivoire)에는 제가
17살이 된 해였던 2011년에 내전이 발생하였습니다. 긴 기간의
시위로 긴장감이 맴돌고 있던 상황에서 내전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때와 같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밖에서 시위자들이 떼창을 하며 행진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총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학교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학교 지하실로 대피하였고
시위자들의 떼창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된 후에는
부모가 방문하는 대로 학생들은 학교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곧 저를 찾으러 오셨고, 집으로 가는 도로에는
피로 둘러싼 시체 몇 구가 덩그러니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것들을 피해 조심히 운전해야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총소리가 끊임없이 들렸고 부모님과 저는 안방구석에서 공포에
떨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으로 피난 올 수
있었으나 분쟁국에서 비행기의 수는 극히 제한적이었기에
부모님은 끝내 빠져나오지 못하였습니다.

한국에서 피난 생활을 하면서 저는 몇 개월간 부모님과 통화할 수 없었습니다. 제 부모님의 집은 반란군의 기지가 위치한 곳과 매우 가까웠으므로 부모님은 집에 아무도 없듯 숨죽여 지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동네에서 반란군은 무고한 민간인들을 길 한복판에 잡아서 그들이 저항할 힘조차 없을 때까지 팬 후 불태워 죽였습니다. 제 부모님을 포함하여 내전 기간에 코트디부아르에 남았던 한인 분들은 아직도 내전의 후유증으로 우울증, 불안감 등을 앓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었던 그 기간에 제가 느낀 공포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 내전을 목도한 제 경험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분쟁, 폭력, 박해를 피해 피난길에 올라 한국을 찾아온 난민들이 얼마나 취약한 상황에 놓여진 사람들인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폭력 속에서 경험한 공포와 생명의 위협은 한 개인을 상당히 취약하게 만듭니다. 당시 저와 제 부모님은 심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만약 제가 한국인이 아닌, 코트디부아르 사람으로 태어났더라면, 그래서 2011년 당시 코트디부아르인으로서 난민신청을 하러 한국에 온 것이었다면 과연 저는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제 부모님이 코트디부아르 사람이었다면요? 저와 제 부모님 모두 한국에서 난민으로 보호받을 수 있었을까요?

코트디부아르인으로 한국에 왔더라면 저와 제 부모님은 당연히, 당연히 난민입니다. 왜냐하면 코트디부아르에서 저와 제 부모님은 도로 위에 시체로 발견된 사람들, 길 한복판에 불에 타 죽은 사람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위협에 처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난민제도를 통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36

37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난민인 이유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는 “한국식의 난민 정의”가 있고, 그것을 평가하는 “시험”이 있고, 그 시험에 “만점”을 받은 자만이 “진정한 난민”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3~4%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중 겨우 0.4%만이 난민 지위를 얻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여 만점에 가까운 대학입학 시험을 치르고 입학하게 되는 명문대의 합격률보다 더 낮은 수준입니다.

삶이 산산조각이 난 난민들에게 시험지에 만점을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가혹한 일입니다. 제가 코트디부아르 사람으로 태어나 그때의 상태로 난민신청을 했더라면, 한국이 내미는 “난민시험지”에 100점을 맞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저는 “가짜난민”이라고 정의되었겠죠. 난민이 아니라서 그랬을까요?

대한민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수많은 난민이 난민으로 인정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가짜 난민” 혹은 장관님께서 사용하신 용어를 이용하여, “허위 난민신청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아직 난민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난민들에게 “가짜 난민”의 딱지를 붙여 쫓겨 낼 것이 아닙니다. 난민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부족함을 깨닫고 문제를 최선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선진국가로 성장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전, 폭력, 박해를 피해 온 난민들에게 대한민국은 그들이 머무는 수 개월간 햄버거와 콜라만을 제공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받은 비인간적인 대우로 호주에서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난민제도는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그러나 난민법 개정을 두고 국회의원들의 38
주장을 들어보면 충격 그 자체입니다. 난민에 대한 지원이 코딱지만
한 상황에서 이것마저 아깝다고, 한국의 주권을 크게 제한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난민신청을 재외공관에서만 받자고 우기며 아예
난민협약의 탈퇴를 돌려 말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이라고 하는 걸 듣자니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취약한 사람들을 홀대하는 방법으로만이 보호될
수 있는 건가요? 이것이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인지요.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외국인과 난민에 대한 비합리적인 대우를
정당화하려는 행위.

그것은 주권을 보호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종차별입니다. 그 누구도 자부할 수 없는 못난 행위입니다.

현재 한국의 난민법은 난민들을 다루는, 사람을 다루는 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도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훼손하면서까지 난민 보호에 뛰어드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주권을 그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많이 지켜질 수밖에 없다고 단정을 짓고 난민을 배척하는
방안으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장관님께 온 맘 다해 요청드리는 바는 진짜난민과 가짜난민을
더 철저하게 가리는 거짓말 탐지기와 같은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이 난민을 받아들일 역량을 갖추도록 온 힘을 다해
힘써주시는 것입니다.

더 기계적이고 더 방어적인 난민법 개정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39 되는 난민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힘써주세요.
난민들은 정관님이나 저나, 대한민국의 시민이 어찌면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끔찍한 공포감을 이겨내며 살아가야 하는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장관님, 난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정직한
난민제도가 성립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편지를 적으며 2011년 아버지가 시체들을 피해가며 운전하셨던
자동차 안에서 공포감에 떨었던 그 날을 다시금 떠올려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한국의 문을 두드리는
난민들의 심정을 상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하는 한국 사회의 혐오의 손가락질과 차가운
면접 분위기도 머리를 스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난민들에게 또 다른 공포의 대상이 아닌,
그들의 지친 마음을 조금이나마 토닥여 줄 수 있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17일

이상아 올림

법무부 장관님께-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 전예진이라고 합니다. 2년 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 직장에 다니며 버는 돈으로 월세를 내며 자취를 하고 있는 여느 청년과 별반 다름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마을공동체에 속해 살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평일 저녁에 공동식사를, 토요일 아침에는 함께 브런치를 먹습니다. 혼자 살다보니 요리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밥과 반찬을 얻어먹곤 합니다. 또한 집에 문제가 생기면 너 나 할 것 없이 도움의 손길을 건네주시곤 하지요.

사람은 결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기도 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기도 합니다. 일상 속에서의 하잘것 없어보이는 작은 손길들이 어떤 이에게는 무엇보다 간절하고 소중한 구원과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난민들이 입국하게 되면서 많은 논란과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머물게 됨으로 인해 불법취업이나 각종 범죄 등이 일어나게 될거라며 언론과 여론에서는 부정적인 시선들이 가득했지요. 그리고 그 우려의 혐오의 시선들은 여전합니다.

41 그러나 그들이 자신이 살던 익숙한 곳을 떠나, 이곳까지 오게 되었을 때에는 생존하기 위한 마음 하나뿐이 아니었을까요. 사람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와 장관님, 그리고 그들에게는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난민들의 인권이 존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깊이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믿는 신은, 인간들에게 ‘더불어 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고 말했습니다. 난민법이 난민들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해줄 수 있는 법으로 적용될 수 있게 법안을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월 18일 목요일

전예진 드림

12번째 편지

한나현

42

안녕하세요. 법무부 장관님.

저는 한국에서 나고 자란 스물아홉의 청년입니다. 그리고 저는 뉴스에서 그토록 걱정하는 - 이민을 가고 싶어하고, 아이를 낳고 싶어하지 않는 - 소위 '청년문제'의 바로 그 청년이기도 합니다. 누구든 자신이 나고 자란 곳에서 좋은 삶을 살고 싶을 것이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저 이후의 삶을 한국에서 꾸리고 싶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는 이 '사회'의 끔찍함을 목도하기 때문입니다. 난민신청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비인격적인 사건들은 장관님께서도 잘 알고계실 것입니다. 난민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냉혹함, 무신경함, 적대감은 제가 속해있는 이곳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지난해 예멘 난민의 입국을 두고 한차례 광풍이 불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몇 개월이 지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럴 일이었는가?"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는 동안 많은 난민들이 한국에서 고통받았습니다. 난민입국에 격렬히 반대했던 이들은 이미 자신이 무슨 말을 했던가를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고통은 여전히 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초래하게 된 것은 이제껏 형식적인 난민제도만 만들어두었을 뿐 난민을 받아들일 아무런 준비도 되어있지

43 많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난민법 개정은 이에 대한 반성이 담겨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난민을 잘 내쫓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난민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난민을 받을 줄 모르고, 받기 싫어하는 사회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 법과 인간을 위한 법은 결코 상충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님, 여하 관계자 여러분!

부디 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들을 환대하기 위해 애써왔던 사람들과 협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난민법 개정은 한국사회를 보다 '사회'답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의 중요한 기로일 것입니다.

2019년 4월 19일

한나현 드림

법무부 장관님께

법무부 장관님,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정부가 난민을 대했던 흐름을 봤을 때 이 결정은 그저 난민의 고통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겠다는 다짐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무책임한 결정인 것이죠. 법무부 장관님께서서는 난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잘 아실 겁니다. 난민이 되었을 때 포기해야 하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또 법이라는 것이 사회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사회가 흘러가는 방향성을 보여준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에 법무부 장관님은 이런 결정에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난민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앞장서서 만들어 낸 지옥의 희생자입니다. 20세기 초 제국주의 국가들은 중동과 아프리카를 식민지 분할하여, 종족 간·종교 간 갈등을 부추겼습니다. 식민 지배 이후에도 독재 정권을 후원하며 민중들의 삶을 억압했습니다. 이 과정에 한국이 빠져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라크·아프가니스탄 파병 등 제국주의 전쟁을 지원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반성해야 할 사실이 존재함에도 이를 감추고 혐오세력의 손을 들어주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난민 신청을 ‘악용한다’라고 하는 말이 난민을 혐오하는

45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은 그저 한국에 존재하는 사회 문제에 대한 시민의 분노를 약자에게 돌리려고 하는 사악한 속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난민’에게는 정말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어째서 이런 결정을 하신 겁니까?

사실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것도 참으로 답답합니다. 한 시민이 이런 편지를 쓰기 전에 이미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옳은 게 아니겠습니까? 제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약자를 배척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성이 아니길 바랍니다. 법무부 장관님이라면, 적어도 오랜 공부를 하시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에 앉으신 분이려면 시민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고민과 옳은 결정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2019년 4월 20일

강이슬 드림

박상기 법무부 장관께,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법무부는 난민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난민법이 행정 관리들의 편의주의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난민보호를 목적으로 갖는다고 할 때, 개정안은 개선 방향이 아니라 개악의 방향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번 개악안이 의회에서 통과한다면, 난민 심사의 벽은 더 높아지고 신청 절차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난민 신청 접수 장소는 대폭 축소되고, 난민 신청자가 출국하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족결합을 어렵게 만들고, 90일 동안이었던 소송 기간은 30일로 줄어들어 난민 신청자들이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반면에 강제소환은 더 쉬워질 것입니다. 장관께 이 개악안의 철회를 요청하려고 이 글을 씁니다.

20년 동안 프랑스에서 난민으로 살았던 저는 한국 땅을 찾는 난민들의 사연을 만날 때마다 부끄러움이 앞서곤 합니다. 동시대인들과 행정 관리들에게서 난민 인권 이전에 난민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박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법무부 개정안을 통해서도 다시금 대한민국 난민법이 난민 보호를 기본 취지로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47 개선을 하고 또 해도 모자랄 판인데 개악이라니요! 법무부 장관께 개악안의 철회와 함께 권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난민 관련 업무를 법무부에서 계속 붙들고 있지 말고 외무부에 이관하십시오. 무언가를 시도하는 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의 녹을 먹는 행정 관리들이 자주 벌이는 일이기도 하지요.

제가 난민 자격심사를 받았던 곳은 프랑스 외무부 소속의 ‘난민과 무국적자 보호실(OPPRA)’이었습니다. ‘보호’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난민 관련 업무가 프랑스에서는 외부무 소관인데 한국에서는 법무부 소관입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난민 관련 업무의 기본 목적이 ‘난민 보호’에 있나, 아니면 ‘출입국 관리, 통제에 있나’의 차이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요? 장관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네바 협약은 인종, 종교, 국적, 사회적 신분, 정치적 견해의 다섯 가지 이유 때문에 귀국할 경우 박해받을 위험이 있는 외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피난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 협약을 비준했고 그에 따라 난민법을 제정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난민 신청자 출신국의 정황을 직접 알 수 있고 난민 신청자와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외무부에서 난민 심사를 관장하는 게 논리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한국에서 난민 관련 업무를 법무부 관할로 둔 것에 대해, 저는 난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보다 외국인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되도록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합리적 존재라면 난민 관련 업무를 외무부에 이관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알고 싶습니다.

세상에 스스로 인종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인종주의적 언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눈으로 사물과 현상을 봅니다. 이방인들을 위험인물로 바라보는 것은 그들에게 투사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겐 일단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게 우리의 자화상이니까요. 게다가 그 잘 모르는 사람이 가진 게 없는 사람일

때 의심의 눈초리는 배척과 혐오의 눈초리로 바뀌기도 합니다. 48 한국사회엔 ‘GDP 인종주의’라고 부를 만한 게 관철되고 있습니다. 백인과 결합한 가족은 ‘글로벌 패밀리’라고 부르고, 비백인과 결합한 가족은 ‘다문화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물신주의와 인종주의가 한국의 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교묘히 결합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법무부의 난민법 개악안이 담고 있는 정신도 한국사회에 관철되고 있는 ‘GDP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가 결합된 것으로 봅니다.

4년 전의 일이었지요. 알란 쿠르디라는 이름의 시리아 어린이가 터키 해변에 죽은 채 떠밀려온 사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만약 그의 아버지, 그의 아저씨가 난민으로 이 땅에 들어오면 바로 위험인물이 되는 건가요? 인디언 수우 족의 기도문 중에 “상대방의 모카신을 신고 1마일을 걷기 전에는 그 상대방을 판단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역지사지의 지혜를 말하고 있지요. 장관께서도 잠시 이 땅을 밟게 된 난민의 처지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예고 없이 이 땅을 찾아오는 이방인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거처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의 손은 그야말로 빈손입니다. 그런 만큼 마음은 열려 있으며 몸은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위험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인종주의에 관한 책을 쓴 타하르 벤 젤룬은 이방인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두려워할 권리를 갖는 것, 그것이 두려움에 대한 승리인 것이다. 두려움에 정면으로 맞서고, 우리 자신의 허약함의 거울 속에서 자신을 냉철하게 직시하는 대신에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을 적에 대한 무기로 만들고 방패로 사용하려고 두려움을 은폐한다. 그리하여, 위험인 이방인은 넘어올 수 없다.”

어떤가요? 이번에 법무부가 내놓은 개악안도 “이방인은 넘어 올 수 없다!”고 말하려는 것이지요. 우리 국민의 의식 안에 폭넓게 자리 잡고 있는 이른바 순혈주의가 난민정책의 배타성을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의 정주를 막는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일민족 신화에 갇힌, 배타적 민족주의의

49 반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조실록에 나오는 아래 기록을 읽어보면 어떨까요?

“호조에서 보고하기를, ‘내년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울적합, 올랑합(이상 여진의 한족). 왜인, 회회(아랍계 무슬림) 등의 사람으로서 토지를 받고 거실을 소유한 자의 월급을 없애서 비용을 줄이십시오’라고 했다. 임금에 그대로 따랐다.”

〈태조실록〉 태종16년(1416) 5월12일의 기록입니다. 조선 땅에 사는 외국인 관리들이 너무 많아 조정 예산을 관장하는 호조가 걱정하는 내용입니다. 외국인이 아닌, 외국인 관리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고대, 한반도로 온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이 기록을 소개한 이희근 겨레문화유산연구원 전문위원은 한반도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교차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자리”함으로써 “다양한 인종이 끊임없이 유입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한반도의 주민은 단일민족인 적이 없었다”고 단언합니다.

실상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두 이방인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우리는 눈을 질끈 감습니다. 즉자적 인간은 타자의 눈으로 나를 볼 줄 모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과거 모습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난 4월11일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로 시작하는 임시정부 헌장이 선포된 지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 여의도공원에서 기념식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이낙연 총리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뿌리 위에 꽃 피웠다”고 말했습니다. 100년 전에 독립운동가들이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부를 세웠던 곳은 중국 상해였지요. 다시 말해, 박상기님께서 오늘 법무부 장관이라는 중임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의 출발은 난민들에 의한 망명 임시정부였습니다.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처지는 난민과 어떻게 다른가요? 가령 ‘초대 법무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시영 임시정부 법무총감도 난민이었습니다. 그런 뿌리를 둔 대한민국이 오늘 세계의 난민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의 인구 대비 난민 수용률은 세계 139위였습니다. 한국의 2017년 기준 난민인정 비율은 1.51%로, 전세계 24.1%, 유럽연합 33%, 미국과 캐나다 약 40%에 비추어, 일본과 함께 세계에서 꼴찌 수준입니다. 그렇게 바늘구멍과도 같은 인정율을 통과해 난민 자격을 얻어도 고용허가제라는 굴레가 기다립니다. 저는 노동허가제 덕분에 파리에서 택시운전을 하면서 생계를 꾸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노동허가제가 없습니다. 난민 자격을 얻어도 고용주에게 ‘간택되어야’ 일할 수 있을 뿐이어서 일자리를 찾기도 어렵거니와 일터를 옮길 자유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내국인들의 잦은 폭력들, 이주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성폭행에 대해 한국의 법무부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대처하고 있나요?

이란인 친구의 난민 신청을 도우려고 나섰던 서울 송파구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떠오릅니다. 그 학생들이 이방인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이방인과 친구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대부분의 한국사회구성원들이 이방인들을 위협적 존재로 보고 혐오하는 것은 거의 무지(“이방인을 만나지 않아 잘 모른다”의 뜻입니다)와 편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 관리들이 해야 할 일은 대중 영합주의에 머물러 이번과 같은 개악안을 만드는 데 있지 않고 그 중학생들의 경험을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법무부 행정관리들부터 솔선수범하여 그 중학생들을 초청하여 얘기를 듣는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의 것인 듯해 그럴 것입니다. 멀리 보이는 불빛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가까이 갈수록 불빛의 따스함은 점차 사라집니다. 모든 불빛에는 주인이 있고 문이 닫혀 있어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이방인들은 먼 곳에서

50

51 이 땅의 불빛을 보고 다가왔지만 그 불빛은 차갑기만 합니다. 크로포트킨이었지요. “법은 힘센 자의 권리다”라고 말한 사람은. 모든 불빛에 주인이 있다고, 그래서 문을 걸어 잠글 수 있다고 주장하는 기능을 가진 게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타자의 생명을 존중하고 타자와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나’라는 존재의 유한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에마뉘엘 레비나스의 말을 전하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긴 편지,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2019년 4월21일
홍세화 드림

박상기 장관께.

새롭고 낯선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설레는 것이기도 하지만 공포스럽고 꺼려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장관님도 경험해보셨겠지만, 새로운 학교에 등교하는 첫 날, 모르는 사람으로 대부분인 모임에 참석하는 날 우리는 모두 약간의 설레임과 함께 긴장감을 느낍니다. 이런 두려움은 그 새로움이 자신이 선택한 경우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입모아서 '젊을 때 꼭 해 봐야 하는 경험'이라고 말하는 유럽여행을 친구와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선선한 날씨의 정말 기억에 오래 기억할만한 것이었지만 여행하는 삼 주 내내 저는 왠지 모를 불편함에 몸이 무거웠습니다. 스스로가 마치 바보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행 내내 저는 누군가의 호의를 구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여행 계획이 어긋나 새로운 교통수단을 찾아야 하거나, 갑자기 소지품을 도둑맞아 경찰서에 가거나, 단순한 편의 시설을 이용할 때도 간접적으로나마 타인의 도움에 기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 언어를 하지 못하기에 상대가 영어를 하기를 바래야 했고, 상대가 제시하는 정보를 무작정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면 거의 모든 여행자가 하는 경험이 이토록 낯설었던 이유는 제가 스스로를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왔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남의 도움 없이 내 할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할 줄 알고, 사람이면 응당 그래야 한다는 생각은 낯선 나라와 모르는 얼굴들 앞에서 외장창 깨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여행자'가 아닌 '국민'의 신분으로, 한국에 가족이 있고 꾸려왔던 삶이 있는 사람으로서 결코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어를 할 줄 알고, 한국의 관습과 문화와 사회적인 질서에 대한 지식이 있는 저는 이미 남들에 기대고 그들을 받치는 돌들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듯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대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문이 생기면 그게 개인이든 기관이든 문제를 제기하고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바를 요구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를 들을 수 있고, 누군가와 약속을 하고 이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저는 익명의 존재가 아닌 '이민혜'라는 특정한 사람이 됩니다. 저와 대화하면서 제가 약속에 자주 늦지만 이를 미리 연락으로 알리는 사람임을, 매운 음식을 싫어하지만 떡볶이를 좋아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고, 나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는 제가 해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화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과 대답들이 곧 저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박상기 장관께서 '박상기'로, '장관'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이런 대화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상상해보세요. 지금까지의 대화가 없던 것이 되어버리는 순간을. 내가 누구였는지 알아줄 사람도 없고, 지금 내가 하는 대화를 통해 아예 새롭게 나를 증명해야 하는 순간을 말입니다. 희박한 가능성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절대 불가능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상대와 나눌 대화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인간으로서 서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약속을 '인권'이라고 부르며 위기의 상황에 처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자고 약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이런 대화가 거부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4만명이 넘는 난민 신청자들입니다. 이들은 자국에서의 생명과 삶에 대한 엄청난 위협을 피해 난민 수용국인 한국에 가까스로 도착했지만, 어떤 얘기도 듣지 못하고, 어떤 말도 하지 못합니다. 한국은 이들에게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이야기할 기회도 주지 않고 ‘가짜 난민’으로 규정합니다. SNS 속 가짜뉴스를 통해 이들은 ‘거액의 지원금으로 무위도식하는 사람들’, ‘잠재적 테러리스트들’, ‘마약중독자들’로 낙인 찍힙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름붙이기의 과정에서 난민들에게는 어떤 해명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난민법 악용을 막기 위해 난민법을 개정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애초에 난민법이 무엇이고, 이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난민 신청 및 심사가 이루어지는지, 선정된 난민은 어떻게 보호되는지 난민들에게 설명된 바 없기 때문입니다. 난민법 이해에 대한 소통이 전무한 지금 ‘법 악용을 막겠다’는 건 법 악용으로 보이는 경우를 지레짐작해 그들을 ‘가짜난민’ 취급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 없습니다. 정확한 근거 없는 짐작과 추측으로 선언하고 통보하는 건 대화గా 아닙니다. 그저 게으름의 표현일 뿐입니다.

저는 한국이 대화가 가능한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짜뉴스에 휘둘리는 국민에게도, 말문이 틀어막힌 난민들에게도 결국 필요한 것은 대화의 창구이고 진짜 정보입니다. 한국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난민법을 제정한 국가라는 사실이 난민의 현실을 알아주고 그들과 대화할 의지를 보여주는 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난민법이 그 ‘의도’에 맞게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난민의 이야기를 국민에게 전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 4월 22일
난민법의 改正을 바라며
이민혜 드림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에서 온 해리(가명)입니다.

난민이 자기와 자기 가족의 생명을 구하려고 희망이 가득한 마음으로 한국에 옵니다. 한국에 오는 이유는 한국이 좋은 나라이고 한국인들이 착하고 정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도움을 구하려 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자기 나라를 떠난 난민은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한국에서 잠깐 머물 수 있는 안전한 곳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희망이었을지도 모르는 한국은 난민법을 개악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난민과 자국민 사이에 높은 벽을 세워 버립니다. 한국이 힘들어 하는 다른 나라를 늘 지원하고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국에서 유학생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난민에 대한 입장을 보면 슬퍼집니다. 만약에 저한테 의견을 말할 기회가 된다면 저는 난민법의 개악에 반대하시는 시민분들을 지지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와 난민은 하나이고, 우리는 서로 도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23일
해리 올림

법무부 장관님

1913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시골마을에서 일어났던 헤밋밸리사건(Hamet Valley Incident)을 아시나요? 헤밋밸리라는 마을에 있는 과일농장에서 수확기간 동안 일을 하기로 되어있던 11명의 조선인들이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백인남성폭도 100여명에 의해 강제추방당한 사건입니다. 당시에는 미국전역에 걸쳐 일본인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있었을 때로 폭도들은 마을에 도착한 조선인들을 일본인으로 착각하여 폭력과 협박을 가했고 조선인들은 결국 기차역에 내려둔 짐도 챙기지 못한 채 다음기차를 타고 황급히 마을을 떠납니다.

무려 100년도 더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만 작년 6월 예멘난민 입국이후 반대와 혐오의 시선이 빠르게 자라났던 우리나라 사회의 분위기를 연상케 합니다. 비록 난민이라는 말조차 없었을 때지만,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그 당시 미국에 살던 조선인들은 난민이었습니다. 어떤 조선인들은 1910년 식민통치가 시작되기 이전에 오기도 하였고 어떤 이들은 이후에 오기도 하였습니다. 한 인구현황(1925-1949년)연구에 따르면 1944년에는 전체 인구의 무려 12%에 달하는 조선인들이 만주,시베리아,유럽,멕시코,쿠바 등 해외 곳곳에서 난민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57 우리나라의 역사는 난민의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난민은 인종, 정치, 종교, 사상의 박해를 받아 조국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식민통치 이전에 온 조선인에 대해 가짜난민이라고 한다거나 이후에 온 조선인을 진짜난민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조선인에 대한 박해가 시작된 시점은 사실 1910년보다 5년 전인 을사조약 체결 이후라고 볼 수도 있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1876년 강화도조약 때부터 있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과 75년 전 인구의 1/10이 난민이었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난민을 위협의 대상으로 본다거나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해 박해의 진위가 확인될 때 까지 수용시설에 체류하게 하는 우리나라 현 정부의 난민제도는 무책임하고 미개해 보입니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난민의 수는 6천 8백만 명에 달하고 한국은 난민협약에 가입한 145개국 중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는 난민사태해결에 어떻게 기여하고자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에 세우려는 장벽이나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발표한 팔레스타인 영토 내 점령지 합병계획이나 우리나라 법무부가 예멘을 무사증 입국 불허국에 포함한 행위나 무엇이 다른니까? 법무부는 난민법 개악을 주장하기 전에 1992년 난민법 제정이 이루어졌던 그 원점으로 돌아가 난민의 역사를 경험한 국가로서 또 민족의 분단의 아픔을 안고 있는 국가로서 전 세계 난민 커뮤니티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 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비영리단체 전쟁없는세상에 따르면 2019년 대한민국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8.2% 증가한 46.7조원이나 되지만 안전 예산은 20조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전한 사회는 국방이 강한 사회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내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다양한 만남들이 안전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짐으로서 구성원들이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관계망이 형성되는 사회입니다. 법무부의 역할은 다양한 사람들이 일상 에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법의 테두리를

58
설정, 보호하고 촉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난민들을 추상적 범죄 집단으로 일반화하거나 검열,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고 난민 개개인들의 필요한 삶의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는 일도 포함됩니다. 법무부는 2006년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는 소수민족'인 한 로힝야 난민부부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처음 입국 이후 20년을 넘게 한국에서 살아온 이 부부는 한국의 난민으로서 일상을 보장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난민개악안을 철회하고 난민심사제도 개편과 난민의 존엄의 지위향상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계인권선언문 제 14조에 따라 입국하는 난민들이 박해로부터 비호받을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2019년 4월 24일
황정인 드림

59 18번째 편지 편세정

박상기 법무부장관께

안녕하세요? 저는 편세정입니다. 농장에서 염소, 양, 닭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난민법을 개정할 예정이라 하는데, 저는 개정되는 내용에 반대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씁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이번 난민법 개정의 내용이 기존의 법 질서를 위배할 위험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저는 법을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은 아니고요~ 고등학교 때 사회과 과목 선생님과 함께 헌법 전문을 읽고 또 읽었던 것이, 우리나라 국민으로 사는 저의 법 지식의 토대입니다. 간소하지요?)

헌법 제 6조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난민에 대한 다자 조약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으니까, 그에 의해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난민 협약 제 5장 행정적 조치 중 32조 추방, 33조 추방 또는 송환의 금지를 읽고, 예정된 난민법 개정이 이 조항을 위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난민협약 체약국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난민을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난민 사전심사 제도를 전면으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사전 심사에서 걸러진 사람에게는 난민 심사도 없이, 이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회도 없이 출국조치가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난민 신청을 한 이유의 뚜껑도 열지 않은 채 난민을 추방, 송환할 위험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난민법 개정으로 인해, 난민협약을 위배하고, 그래서 헌법 제 6조도 위배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법 질서가 원칙에 맞게 잘 운용되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경계하는 시민으로서, 큰 원칙을 어기는 이번 난민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번 난민법 개정이 우리 사회의 치안과 안정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난민의 권리를 가능한대로 제한하고, 난민심사 절차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그래서 난민신청인을 추방하고 구금하는 식으로 법 질서가 시행되면, 우리 사회가 더 안정될까요? 불안이 줄어들까요?

헌법으로 체결한 조약의 큰 원칙을 무너뜨리고 난민의 권리를 위법적으로 제한하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사회 불안을 낮출 방법이라면, 이번 난민법 개정안은 ‘아쉽지만 어쩔수 없는 선택’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불안을 더 키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60

61 억울하고 절망할 사람들의 분노가 터지면 어떡하지, 그게 더 무서워요. 기본적인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당할 이들이 화를 내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난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로 오는 난민도 늘어나는 거라는데,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지에 대한 숙의가 이번 개정안에 담겼나요? 사회 안전망을 구성하는 데 실패한 정치의 책임을 시민들이 묻고 있어요. 난민협약에서 탈퇴하자는 청와대 청원의 요지는 결국, 안전한 사회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난민법 개정안은 그저 입막음에 급급한 선부른 조치로 보입니다. 이번 난민법 개정에 반대하는 마지막 이유는, 언제나 저의 권리를 지키며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권리를 ‘난민이라는 이유’로 제한할 수 있는 사회는, 다른 누군가의 권리도 어떠한 다른 이유로 제한할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난민신청인에게 비인간적인 조치를 가할 수 있는 사회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난민이라서, 편의점 알바생이라서, 주야 맞교대 근무자라서, 대학 시간강사라서, 변호사 시험에 5번이나 떨어졌으니까, 특수고용노동자인 야쿠르트 아줌마와 화물차 기사니까,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으니까, 중증 발달장애인이란 이유로(아니, 중증이 아니라도 어쩔거나 발달장애인이란 이유로), 누군가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어쩔 수 없거나, 관행이거나, 당연하기까지 한 사회는 도무지 원하지 않아서 이번 난민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나에게 있는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사회에서 살고 싶어서, 난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이번 난민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편지를 씁니다.

법무부의 재고를 바랍니다.

2019년 4월 26일
편세정 드림

19번째 편지

현민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스무살이 된 김현민 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4월16일에는 친구들과 함께 안산 세월호 추모제에 갔습니다. 신호등을 기다리는 중, 어떤 기자님이 저희 무리로 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분은 몇몇 질문을 하면서, 왜 이런 곳에 와야 할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사람이 죽었으니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써놓고 보니 난민을 지지하고자 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사람이니까요. 저에겐 어떤 사회적, 정치적 이유보다도 생명을 가진 이들의 삶이 중요합니다.

저는 상생相生 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같이 산다는 뜻이지요. 친구들과 서로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직업이, 돈과 명예보다는 보이지 않는, 우리가 살고 싶은 모습을 이야기 하면 늘 무한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건 누군가를 배제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살이 되어 경제적 독립을 해보면서, 저는 매우 가난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나마 내 이웃과 이 세상의 생명들과 더불어 때 저는 제가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음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을 배제하며 내 존재를 긍정하는 것이 얼마나
오래갈 수 있을까요?
그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도움받지 않은 이가 없다고 합니다.
이 편지가 읽히길 바라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28일
현민 드림

64

65

20번째 편지

최수근

박상기 법무부장관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최수근입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2009년 5월부터 일을 시작했으니 이제 10년이 갓
넘었지요. 그동안 약 80개국의 학생들을 1000명 정도 만나왔습니다.

제 첫 학생들은 네 명의 버마 난민이었습니다. 그들은 버마의 군부
독재에 맞서다가 위협을 느껴 망명을 선택했습니다. 1988년 8월
8일 버마의 양곤에서는 대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반군부 평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정권을 장악한 군부는 시위를 무자비하게 진압했고,
결국 수천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시위에 앞장섰던 젊은이들이
20년이 지난 후에 저와 만났습니다.

이 분들이 버마에서 공부했던 것들은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고 결국 공장에 들어가 몸으로 부딪히면서
일하고 한국어를 익혔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의사표현에도 어려움이 없던 이분들이 굳이 한국어 교실에
오신 것은 입에 뱀 발음 오류를 바로잡기위해서, 그리고 일상 회화가
아니라 격실을 갖춘 문장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위엄 있게 발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66
뜻내기 교사였던 저는 이 분들과 보낸 시간이 매우 행복했습니다. 진지하게 공부하는 와중에도 유머와 여유를 잃지 않으셨고, 조카뻘에 교사 경력도 없는 저는 깎듯하게 대우해주셨습니다. 다정한 한국인들도 있었지만 온몸으로 차별의 벽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10년이 넘도록 투쟁해야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한국으로 망명을 오시던 날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예상하였을까요.

어느 날 제가 ‘왜 한국을 선택하셨나요?’ 하고 묻자 이분들은 ‘김대중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답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은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이분들은 여전히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에서 하신 일을 인정투쟁으로만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은 매주 버마 대사관에 가서 민주화를 호소하는 집회를 열었고, 한국시민사회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의 청소년들을 만나서 버마의 이야기를 전하고, 한국의 동화책을 버마어로 번역하고, 민주화 투쟁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버마 청년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지을 꿈을 품기도 했습니다.

저와 같이 공부했던 마웅저 선생님은 드디어 2008년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이분은 십수년의 노력으로 얻어낸 난민지위를 반납하고 버마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상한 일이지요. 난민지위를 얻는 것이 그리 대단한 특권을 준다면 어째서 그렇게 틀틀 털고 떠났을까요. 난민인정을 받은 후로 이분은 버마 어린이들을 위한 시민단체를 만들어 활동했습니다. 교육에서 희망을 찾으신 거지요. 그리고 버마로 돌아가서 할 일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마웅저 선생님의 ‘따비에’는 여러사람의 힘을 모아 버마에서 도서관의 문을 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는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저는 언어의 벽에 막혀서 자기 이야기를 전하지 못하는 슬한 사람들을 만나 봤습니다.

67
‘난민’이라고 한데 묶여 불리는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로 자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일입니다. 저는 그들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 버마 난민 선생님들과의 마지막 수업에서 서로 작별인사를 나누었을 때 한분은 저를 포옹하시면서 “최 선생님 끝까지 저희들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세요 고마워요” 하며 웃으셨습니다. 저는 이 다정한 말씀과 따뜻한 온기로 난민 선생님들을 추억합니다.

2019년 4월 30일
최수근 드림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

장관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김세경이라고 합니다. 난민법이 실질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방향으로 바뀌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이주민과 난민에 대해 관심이 많아진 저는 작년에 미국 내 난민정착지원기관에서 약 8개월 동안 인턴십을 했습니다. 제가 일했던 팀에서는 클라이언트(난민)가 미국에 입국하는 순간부터 90일 동안 주거, 의료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루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한 클라이언트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클라이언트는 미군에서 일했었기 때문에 특별 비자를 받아 비교적 쉽게 미국에 오게 된 사람이었고, 저는 마음 한 구석에 이 사람을 우리 기관에서 이렇게까지 도와주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며 이 생각이 정말 안일하고 무지한 생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폭격이 일어났다, 폭탄이 터졌다 라는 뉴스를 시도때도 없이 접하는 삶, 직접 폭격 소리를 듣는 삶, 친적이나 가족이 폭격으로 죽는 삶, 출근하며 가족들과 하는 인사가 마지막 인사가 될지도 모르는 삶, 제가 한 번도

69 겪어보지 않았고 잘 알지 못하는 이 분의 삶에 대해서 함부로 쉽게 판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 이 분의 모습을 보며 반성하는 동시에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난민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던 터전을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살고 싶어도 살 수 없기에 그곳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나라를 거치며 죽을 고비를 넘기고 때로는 가족과 헤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한국에 오기까지 그들의 여정을 선불리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난민들이 새로운 곳, 한국에서 잘 정착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많은 힘과 용기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난민들을 향해 더 열려있는 법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1일

김세경 드림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국제과정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유찬입니다.

저는 작년에 기회가 닿아 체코에서 열린 한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대회가 끝난 날에는 친구들과 함께 프라하의 골목들을 누비며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가려던 찰나, 한 남자가 걸어가던 저를 붙잡고 제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에게 화를 내며 침을 뱉고 갔습니다.그날, 전 충격에 빠져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존중이 아닌 위협을 받아야 했다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제가 어디에 사는지, 몇 살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미래에 무엇이 하고 싶은 지. 이런 사실들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제 인종은 그가 나를 '무시해도 되는 사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규정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겪었던 경험은 전쟁과 박해를 피해 먼 피난길을 걸어와 한국에 도착하신 난민분들이 겪는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민분들은 저처럼 비행기를 타고 집에 돌아가 사랑하는

71 가족과 친구들 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잔인하고 무자비한 전장에서, 핍박과 혐오의 시선에서, 국적국의 박해에서 도망쳐 삶에 대한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돌아갈 곳은 없습니다. 난민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들은 제 발로 공포와 폭력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난민분들은 지금 산산이 부서진 삶의 조각들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제시한 난민법 개정안은 그들 앞에 올려다보지도 못할 높은 벽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핍박과 혐오로부터의 보호가 절실한 분들에게서 마지막 희망을 빼앗는 가혹한 결정을 내려선 안됩니다.

마르틴 니컬러 목사의 시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와 함께 편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대한민국이 타인의 아픔에 침묵하지 않고 그들에게 도움이 손을 뻗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2일

김유찬 드림

박상기 법무부 장관께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서울에서 살고 있는 최하늬라고 합니다. 최근 법무부 장관께서 발표한 난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난민법 개정안을 살펴보니 ‘국가 안보, 국가공동체, 공공질서에 위협이 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을 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을 겪고 분단의 역사를 짊어지고 살아가면서 ‘국가안보’라는 명확하지 않는 기준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국가공동체에 위협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물색하여 색출해왔습니다. 제주 4.3 항쟁, 여순사건, 5.18혁명 등 ‘자신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 사람들’을 한순간에 정치범으로 만들어 감옥에 가두거나 고문을 하는 등 국가와 정의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또 다시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자신의 삶을 지키려 위협을 감수하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다시 올라미를 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중적인 잣대나 모호한 이념을 갖고 사람을 색출하고 벌하고 공동체의 테두리에서 밀어내는 것을 그만 멈추어야 합니다.

73 난민법은 난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존중하는 배려와 이해의 관점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을 구체적이지 않은 잣대로 구별하고 구분하고 색출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한명 한명이 안전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의 테두리를 넓게 만드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개정안을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는 요청을 드리며 이만 편지를 줄이겠습니다.

2019년 5월 3일

최하늬 드림

만나 빈 적이 없는 분께 편지를 쓰려니 마음이 전달될 수 있을까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먼저 제가 난민의 상황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10년 동안 일본에 살다가 작년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한국에 온 제가 처음 경험한 사건이 예멘 난민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반응들이었습니다. 난민수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저에게는 다른 측면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
온 난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국에서 겪는 고통은 잘 들리지
않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오랫동안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인지 저는
그 상황이 남 일 같지 않았습니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보호가 주어지는 유학생이었음에도 10년간
외국에 사는 것은 스스로 '이방인'임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방인'이란 무엇일까, 그 사회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라면 이방인이라고 불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방인으로 여겨진다는 것은 그들이 사회 저 밖의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 사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닐까?' 한국에 돌아가서도
한국 속의 이방인이 있음을 그들이 '우리'의 일원임을 잊지 말아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난민에 대한 기사와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그분들이 이미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어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난민분들의 차이는 너무나 크지만, 저의 경험이
그분들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나 활동단체의 설명이나 그분들의 글을 찾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로HING야 사람들에게 대해서 "존재하는 것이
유일한 저항인 사람들"이라고 한 국제 인권 변호사님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난민들이 한국에 들어온 사유는 매우 다양합니다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존재하는 것이 유일한 저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도망쳐 온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들이 살아갈
장소를 찾는 것이 다시금 유일한 저항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한국!>>이란 난민 에세이집을 보면 왜 한국으로 왔냐는
질문에 한 난민분은 이렇게 답합니다. 만약 당시 발밑에 폭탄이
떨어졌는데 어느 창문으로 나갈지 고민할 시간이 있었느냐고, 살기
위해 보이는 창문으로 몸을 던져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소수민족이거나 여성이나 성소수자이거나 독재정권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그것을 피해 온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고통스럽고 아슬아슬한 그 순간들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온 난민들이 목숨을 걸고 도망쳐 온 그 순간들보다
한국에 도착한 뒤에 겪은 고통이 더 크다고 하여, 저는 다시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길지만 조금 더 써 볼게요. 세계인권선언 14조에 따르면 난민신청을
위한 정보제공은 기본권인데도 난민신청을 위한 어떤 정보도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대로 난민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기까지
몇년씩 걸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난민신청 이후에도 문제는
계속됩니다. 난민신청서를 작성하면 G-1 비자를 받는데 이후
6개월간 취업금지이기 때문에 불법취업을 할 수밖에 없고
불법취업이 알려지면 강제송환 당하므로 일자리에서 온갖 착취와
인종차별을 겪게 됩니다. 난민심사에서는 통역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3~4시간 고압적인 태도와 인권침해를 받습니다. 대다수는
난민인정을 받지 못하고 인도적 체류자격을 받는데, '인도'라는 말이

76 붙어 있음에도 의료보장, 취업이 보장되지 않으며 가족이 함께 살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난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기 위해서 법을 어기거나, 법을 지키면서 죽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난민심사는 난민인정을 부정하기 위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절차처럼 느껴진다고. 마치 한국 정부가 난민신청을 한 죄로 자신들을 벌주고 있는 것 같다고.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2%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저에게 한국사람이라는 것에 대해 깊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이처럼 현재의 난민법과 그것의 시행절차에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난민을 지원하는 활동가들은 이번 난민법 개정안으로 “난민 심사의 벽은 높아지고, 강제송환은 더욱 손쉬워지며, 난민신청자들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축소”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난민법 개정안이 그대로 실행된다면, 난민법의 존재의의를 난민법의 이름으로 부정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난민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어 놓은 난민인권센터의 해석을 읽어보니, 첫째로 사전심사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난민인정을 받기 위한 신청기회마저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합니다. 둘째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국가공동체에 위협한 존재가 되는 사람,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하는 경우 강제송환”한다는 방침을 정해두고 있는데, 이 기준들은 모호하여 오용될 소지가 크다고 합니다. 셋째로, 난민신청 접수 장소와 절차는 제한적이 되었고, 심사절차의 핵심요소인 통번역을 민간에게 위탁을 준다는 조항이 삽입되는 등, 난민들이 난민인정신청을 하기조차 더욱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보호가 꼭 필요한 난민들이 정당한 심사를 받지 못해 강제송환을 당하고 한국에서 살아가는 난민들은 더욱 고통스러워질까 걱정이 됩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생존’하는 일이 그들의 유일한 저항이 될까 두렵습니다. 바로 옆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제 삶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생각하게 됩니다.

77 저는 법에 문의한 입니다만, 법무부 장관님께 드리는 편지인 만큼 법이 어떤 효과를 지니는지 열심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난민법 개정안이 지닐 효과에 대해서도요. 그리고 법은 사회에서 무너져서 안 되는 기본적 윤리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난민법 남용을 막는다는 이유로 난민 신청 및 인정절차의 벽을 더욱 높이고 강제송환을 더 용이하게 만든다면, ‘이 사회에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가 있다’는 생각이 사회 전체에 확산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함께 사는 누군가를 ‘이상한 존재’로 간주해도 된다, 추방해도 되는 존재가 있다, 살아갈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있다는 생각이 법의 이름으로 용인될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시적으로 난민의 유입에 따른 ‘시민’의 불안은 잠재울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공동체 중 가장 약한 사람을 낙인을 찍어 배제하는 경향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낙인찍힌 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 더 약한 사람에게 소수자라는 낙인을 찍어 배제하고 그 낙인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고 싶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난민뿐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이나 혐오범죄로 확산되고, 불안과 경쟁과 배제가 사람들 마음속 겹겹이 ‘심사제도’라는 벽을 만들게 될까 두렵습니다.

일본에 있는 동안, 저는 매년 비자를 갱신하러 입국관리소를 찾았습니다. 일본에 있을 자격을 심사하는 그곳은 신청자를 감시와 판단의 대상으로 만들기에 누구에게도 편안하지 않은 곳입니다. 저보다 훨씬 먼저 일본에 왔던 언니들과 비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전에는 아시아계 여성이 비자를 신청하면 일본에서 성산업에 종사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 어린 눈초리로 보곤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민족, 계급, 성을 이유로 차별당하는 상황에 대한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느껴집니다. 수많은 아시아의 이방인이나 난민 여성들이 일본 사회의 고통스러운 노동을 담당하거나 성착취를 당했던 경험이 현재를 살아가는

그녀들의 말로 되살아나는 것 같으니까요.

78

이처럼 난민의 고통은 난민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회의 가장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부분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난민들은 난민 인정을 받는 게 너무나 어려울 뿐 아니라, 인정을 받은 뒤에도 여성차별, 성소수자차별, 인종차별, 계급차별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난민인정절차 및 심사를 국제의 인도적 기본권이 지켜지도록 개선하는 동시에, 난민이 인정된 뒤에도 여성이거나 장애인이거나 성소수자이거나 다른 인종이라고 억압과 폭력에 노출되지 않는 방법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한국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폭력도, 매일매일 ‘우리’가 일터와 삶의 장소에 겪는 경쟁, 배제, 따돌림과 같은 관계의 고통도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10년간 있을 때, 저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 일본 속 이방인이었던 재일조선인이나 아시아 유민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일본 사회의 억압과 폭력을 받았지만, 그 속에서도 누구든 어디서든 억압과 폭력 없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소박한 윤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냈습니다. ‘한국인’ 또한 슬한 난민의 역사를 갖고 있지요. 식민지 지배 속 강제동원 강제연행, 1945년 이후 전재민의 힘겨운 이동, 한국전쟁의 피난민, 독재정권 하 민주화 및 노동운동 속 정치적 망명자들... 그리고 이제 ‘우리’ 난민의 경험을 변화시켜온 ‘이곳’의 문을 두드리는 또 다른 ‘난민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닮은 그들 말입니다. 이곳의 미래를 난민과 함께 생각하는 것은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고 애도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과 만나듯 타자들 만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집트의 독재를 피해서 온 한 난민분은 자신은 “한국에서 ‘자유’ 속에 살고 있으며 이집트로 돌아갈 수 있기를 꿈꿀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분과 함께 한국의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요? 난민이며, 난민이었고,

79 난민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현재의 난민법 개정안을 재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생존이 유일한 저항이 되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살아갈 방법을 찾는 것이 유일한 저항이 되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추방당해도 되는 존재가 있다’라는 생각이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높디높은 낙인의 벽을 세우지 않을 수 있도록, 난민법의 새로운 내용과 실행을 고민해 주십사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낮선 사람이 보내는 길고 긴 편지를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세먼지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높고 바람이 따뜻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2019년 5월 4일

신지영 드림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고등학생 김지유라고 합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난민에 관한 지식이 거의 없었지만 작년, 제 이란친구의 난민인정을 도우며 그들에 대해 알게 되었고, 작은 부분이나마 그들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의 난민인정을 도운 것을 계기로 저는 더 이상 난민이 남의 일이 아니며 누구든 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이 여러 가지 위험 때문에 자신의 나라를 떠난 난민이라고 가정해보고자 합니다.

아빠가 저희를 재촉하시며 급하게 짐을 싸라고 하셔서 저희는 영문도 모르는 채 돈과 중요한 물건들만 챙겨 나왔습니다. 아빠를 따라가니 저희를 새로운 나라로 데려다 줄 브로커가 계셨어요. 브로커는 우리에게 비싼 돈을 요구했는데 아빠는 목숨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설명해주셨어요. 국경을 넘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미리 준비한 가짜 여권과 신분증으로 위장했어요. 배를 타고 밀림을 지나 어떤 나라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지만 난민협약에 가입한 나라라고 해서 얼마나 안심했는지 몰라요.

81 그 나라에서 지내려면 난민으로 인정받아야만 하는데, 신청절차는 복잡하기만 하고 그 나라의 언어를 모르니 제대로 된 심사를 받기 전부터 넘어야 할 산은 많았어요. 난민심사 과정에서는 제대로 된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딱딱한 분위기에 너무 떨려서 저도 모르게 망설이며 대답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난민 심사장을 나오자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머리는 새하얗졌어요. 또 한편으로는 단 한 번의 기회로 저희 가족의 생사가 결정된다는 것에 허무해졌어요. 하지만 저희 가족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기로 했지요. 난민 신청 후 아빠는 6개월간 취업을 하실 수도 없었어요. 그 기간 동안 일하게 되면 바로 출국해야 된다고 하셔서 무서웠거든요. 국경을 넘어오느라 돈이 없던 저희 가족이 6개월 동안 어떻게 생활했는지...상상도 하고 싶지 않아요.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난민심사결과, 몇 달간의 기다림은 불인정으로 허무하게 끝났어요. 사유서를 보니 우리보고 거짓말쟁이래요. 목숨이 위협해서가 아니라 돈을 벌려고 난민신청을 한 거래요. 억울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재판을 걸었어요. 다행히 인권변호사님께서 무료로 변호를 맡아주셨어요. 변호사님께서 면접 때 난민조사관이 불러왔던 통역관이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잘못 통역했다고, 그래서 난민불인정처분을 받은 거니 재판에서는 꼭 이길 거라고 안심시켜주셨어요.

하지만 재판결과에 저희 가족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재판부에서는 관청의 말만 들었어요. 위조 신분증과 위조 여권을 사용해 입국하고 브로커를 활용한 것이 문제라고 했어요. 정치적 탄압을 피해서 본국을 떠난 저희 난민들이 어떻게 본국 대사관에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겠어요...가짜 여권을 만들기 위해 위조 신분증을 만들었고, 비공식적인 경로로 입국하는 것이 난민이고 어느 나라 난민이나 다 같은데 이런 상식을 모르는 관청과 재판부가 어디 있느냐 하고요. 또 저희가 국경을 넘기 전, 제가 나라에서 학교를 다녔다는 이유로 아빠가 탄압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저희 가족의 간절함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아 눈물만 났어요. 변호사님과 부모님은 밤새 우울해 하셨어요. 변호사님

82 말씀에 따르면 이 나라는 기억상실증에 빠진 나라래요. 한 백년쯤 전에 이 나라가 이웃 나라한테 침략당해 많은 백성들이 나라를 떠나 난민이 되었대요. 그 때 경찰과 헌병들 감시를 피하느라 변장하고 위장하고 가짜 신분증을 들고 다니던 시절을 잊었대요. 변호사님은 난민재심사를 받는 마지막 방법이 있다고 하시면서도 얼굴을 펴지 못하셨어요. 최근에 관청의 장관님께서 변경할 만한 이유가 없는 재심사는 정식 심사를 못하게 막으려는 법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약식으로 심사해서 바로 출국시켜 버린다는 거지요. 변호사님께서도 너무 억울하다고...돌아가면 저희를 기다리는 건 죽음뿐이라면서 한숨만 쉬셨어요. 난민협약에 가입한 나라라더니...마지막 희망이었는데.. 참 이상한 나라구나.. 중얼거리는 엄마의 눈가에 눈물이 맺힐 때 하늘에선 빗물이 쏟아졌어요.

이 이야기가 저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난민들은 서로 다른 자신들만의 사연을 가지고 자신의 나라를 떠나 난민으로 인정받길 원합니다. 그들이 가짜 난민인지 진짜 난민인지 판단할 자격이 저희에게 있긴 한 걸까요? 왜 사람들의 사연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지 않나요?

장관님께서 누구보다 그들의 나라와 가족의 상황에 대해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난민의 입장에서 난민법 개정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여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장관님께 부탁드립니다.

2019년 5월 5일
김지유 드림

83 26번째 편지
임한주

안녕하세요.

저는 가나에서 2년을 거주하며 현지 대학을 다니다가 몇 일 전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제가 살던 가나는 서부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과는 정말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직항이 없고 가장 빠른 비행편을 타고도 하루를 꼬박 날아야 합니다.

지리적 위치만큼이나 두 나라는 문화적 거리도 상당하다고 느끼는데 문화적 차이 중 하나를 꼽자면 모르는 사람이 지나갈 때의 시선 처리입니다.

한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 가끔적 눈길을 피하는데 가나에서는, 특히나 외국인이었던 제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강의실을 들어갈 때면 수백 개의 눈길이 소나기처럼 제게 쏟아졌고 거리를 거닐 때면 꼬마들이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오브로니! 오브로니!” 소리치곤 하였습니다.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는, 익숙한 그들의 반응이지만,

초창기에는 어찌나 민망하고 싫던지요.

84

오브로니. 현지어로 하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나에 첫 발을 딛고 나서의 첫 몇 달은
그들이 제게 보내는 눈빛과
저를 부르는 호칭을 통해
나는 그들과 다른 사람,
나는 오브로니이고 그들은 아님을 온몸으로 느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2018년이 몇 달 남지 않았을 때 즈음 저는 한 가나 친구를 만났습니다.

같은 과목을 공부하던 친구였기에 자주 보게 되었고 많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게 되었던 그 친구에게 하루는 제가
질문했습니다..

“너는 나를 오브로니로 봐?”
나보다 내 피부색이 먼저 보이는지, 내가 이방인임을 늘
유념해두는지가 궁금하였습니다.

그의 대답은 솔직하고 간단했으며, 명료하였습니다.
그 날 그의 말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주,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인걸.”
솔직히 첫 만남에는 오브로니를 대하고 있다는 생각이 압도적이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대화를 할수록
그저 이 아이도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끼는 한 명의 사람일 뿐임을
깨닫게 되었노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난민에 대해 제대로 공부해 본적도 없고, 난민조약이나 협약의
조항들을 꿰뚫고 있지도 않습니다.

85 하지만 한가지는 명확히 압니다.

가나인이든 오브로니든,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인권을 억압받는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인권을 정당히 누릴 수
있는 나라에서 난 사람이든,
난민이든 비난민이든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이라는 것과,
그 아이덴티티의 소유자로서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 권리가
주어짐을.

난민협약에 의하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 내의
구성원 신분, 정치적 의견으로 인해 탄압받거나 탄압받을 가능성으로
인해 고향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오랜 집을 떠나 이방인의 여정길에 오르는 것은 슬프고
힘들지만,
인권을 짓밟히는 것은 숨이 막히는 일이기에 어쩔 수 없이 국적국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한국에 온 이들의 침해된 인권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
이것이 난민법의 주 목적입니다. 난민법은 난민 혹은 난민신청자를
거절하고 방관할 근거를 제시하는 메뉴얼이 아닙니다.

이번 개정안의 방향은 어떤가요?

제시된 개정안이, 난민법의 근본적 취지를 따르고 있는지 다시 한
번만 생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디 낯선 땅에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2019년 5월 6일

난민들이 사람답게 살길 바라는

임한주 드림

27번째 편지

우지원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
우지원입니다. 앞으로 바뀌게 되는 난민법의 내용에 대한 제 생각을
전하기 위해 장관님께 이 편지를 드립니다.

먼저 저는 결코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난민에 대한 처우는 결코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우리와는 다른 문화와
경험이 유입되면 예상치 못한 사고들이 따라오리라는 걱정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난민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지금 우리
사회의 태도가 과연 이성적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단편 〈법 앞에서〉의 내용을 장관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요? 통과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결코 열리지 않는 문은
이름뿐인 이번 난민법 개정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이 통과되면 난민 심사의 과정은 현재보다 몇 배로 짧아지고
엄격해집니다. 현실적으로 정치적 또는 사회적 박해에 내몰려 자국을
떠나온 피난민이 단 몇 주 만에 그 복잡한 절차를 모두 통과하리라
믿기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개악안을 발안한 당사자인 일부 국회의원
분들 역시 이 사실을 모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온정주의와
인도주의를 구별하자’는 법안의 취지를 의심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장관님께 여쭙니다. 난민 심사의 벽을 높여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게 하면 난민이라는 존재는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사라집니까? 사사건건 걸림돌이 되는 난민 협약에서 탈퇴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난민이라는 세계적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오히려 난민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미 국경 폐쇄와 같은 단순 미봉책으로는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는 방증이 아닌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한민국에 들어온 난민을 더 많이 수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식에 따라 돌려보내자는 것입니다. 최소한 대한민국이라는 법치국가에 들어온 난민이 모든 차별에 앞서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프로토콜에 따라 인도적인 절차를 밟는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요청입니다. 더불어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책임은 국민과 난민 모두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체계적인 관리 하에 수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관님께서서는 책임자로 부임하시던 날 “법의 이름으로 인권이 침해되어 고통을 받는 상황을 막겠다”고 큰 소리로 약속하셨습니다. 관행적인 법무행정에 안주하기보다 인권을 위한 개선방안을 앞장서 마련하겠다고도 하셨습니다. 개약안의 실질적인 취지가 권리의 부여가 아닌 법률 만능주의의 남용에 있음이 분명한데도 가짜 뉴스를 앞세운 혐오 여론에 우리 헌법의 법 정신이 뿌리까지 흔들리는 상황을 막아 주십시오.

난민을 쫓아낸 자리에 남은 허울뿐인 법치주의의 화살이 다음에는 어느 집단을 향할지 저는 두렵습니다.

자유와 민주의 5월, 가정과 평화의 5월입니다.
장관님을 비롯해 모두에게 평화로운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19년 5월 7일
우지원 드림

89 28번째 편지 심아정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서신

안녕하세요, 심아정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15년을 살았습니다. 일본에서 살 때 가까운 거리는 주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곤 했는데, 어느 날 밤에 놀러 온 친구를 배웅하면서 함께 수다를 떨며 자전거를 끌고 역으로 걸어가다가 동네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전에 몸이 안 좋아서 자전거를 끌고 킁꿍했던 귀갓길에 선뜻 나서서 도움을 주었던 안면이 있는 경찰이었습니다. 도움을 받은 일도 있고해서 몇 번 마주칠 때마다 그와 나는 웃는 얼굴로 인사를 했던 사이였기에, 그날 밤에도 저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동료와 함께였던 그의 표정은 어쩐 일인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그 경찰은 그때까지 제가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나 봅니다. 그와 한국말을 할 이유가 없었고, 오랜 일본 생활로 한국인 특유의 억양이나 발음이 저에게 별로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날 밤 그는 한국말을 하며 걸어가는 저를 불러 세워놓고 웃음기 하나 없는 얼굴로 “한국사람이었냐”, “이 자전거가 당신 소유의 것이 맞냐”며 외국인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자전거 도둑으로 몰린 불쾌감이 밀려왔지만, 친구를 배웅하기 위해 잠깐 나왔던 터라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저는 그들을 따라 경찰서에 가서 이런저런 납득할 수 없는 협박 비슷한 설교를 들어야 했고, 결국엔 경찰들과 함께 집에 가서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나와 보여주는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몇몇 이웃들은 그 광경을 훑어보려고, 경찰들은 ‘상황이 종료되었다’며 돌아갔습니다.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었지요.

상황은 종료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 밤의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무서웠고, 화가 났고, 무엇보다도 슬펐습니다. 평소에 친절하게 저를 대해 주었던 소박한 청년의 얼굴이 한순간에 돌변한 이유가 고작 나의 국적이며, 일본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순식간에 도둑으로 몰리는 상황이 소름 끼쳤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내가 도둑이 아님이 입증된다면,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미등록자들이 언제든 도둑으로 몰릴 여지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현실을 처음으로 실감한 날이었습니다.

실제로 미등록자들을 지칭하는 프랑스어 sans-papiers를 직역하면 ‘종이-없는’이며, 이 표현은 이민/노동등록증이 없는 이주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있는지의 차이가 범법자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상황은 우리 곁에서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이미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나 또한 국가의 안팎에서 그런 사태를 조우할 수 있다는 공포를 ‘몸’으로 경험한 날이었습니다. 말을 잘 알아듣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 알고 있었던 나조차도 경찰서에서 공포스러웠던 기억이 있는데, 상황이 훨씬 좋지 않을 난민들은 오죽할까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작년의 제주 예멘난민사태를 접하면서 저는 난민을 어떤 사람이나 이러저러한 존재로 규정하는 것보다 ‘난민화’ 되어가는 ‘상태’ 혹은 ‘사태’에 주목하면서, 난민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사유는 국가 밖으로 내던져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국가 안에서도 실제로는 ‘국가-없음’의 사태를 마주하는 난민상태에 놓인 국민들을 언급할 때에도 매우 적절한 틀이 되더군요.

지난 4월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일부

91 적용 배제는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노동권의 보장이 고용주의 의무에서 벗어나도록 방치하고,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의 삶을 법 밖으로 밀어내기 위해 구구절절 써내려 간 판결문을 읽고, ‘정의에 대한 법의 태만’은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형식상 국가의 테두리 안에 있거나 국민의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법과 제도의 바깥으로 밀려난 인간의 권리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이 편지에서 언급하는 난민들은 비단 외국인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는 건 다름아닌 한국의 법과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두고 싶습니다.

이러한 모순을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한나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난민의 지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권리가 없는 사람들의 비운은 그들이 생명, 자유, 행복추구, 또는 법 앞의 평등과 의사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이상 어떤 공동체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의 비극은 법 앞에서 평등하지 않다는 점에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3월에 발표된 개정안은 프랑스 파스카 법안을 떠올리게 합니다. 파스카 법안은 1993년 6월, 프랑스 하원이 통과시킨 이민법안으로,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지요. 이 법안은 유럽공동체(EC) 회원국의 시민을 제외한 외국, 특히 제 3세계 국민들의 프랑스 입국 및 체류증 획득에 필요한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실업 등 사회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불법 이민의 유입과 위장 결혼 등을 통한 프랑스 시민권 획득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샤를르 파스카 내무장관이 제안한 이 이민법은 사회당 및 공산당 의원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원 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파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악이 ‘박상기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후세에 오명을 떨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간과할 수 없는 쟁점으로 저는 ‘사전심사 대상자’ 규정을 먼저 따져 묻고 싶습니다. 무엇을 위한 사전심사입니까?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정부에 의해서 ‘난민이 아니라고 일괄적으로 판단되는 사람들’은 3주라는 짧은 기간 안에 심사가 종료되면서도 이의를 신청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출국조치를 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이 난민협약에 위배된다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무엇보다 저는 법무부장관에게 ‘어떤 책임주체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지에 대한 명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개정안에 기재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공질서를 이유로 하는 경우’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요? ‘국가공동체에 위협한 존재’라니, 도대체 어떤 위협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부 당국이 규정한 국가안보가 국민들의 실질적인 안전과 안녕으로 직결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판단의 근거나 기준이 명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무슨 근거로 난민의 자격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까?

‘난민화’된 사람들은 생활여탈권을 쥔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 사태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이 범법자임을 판단하는 주체는 사법기관이 아니라, 일본에서 제가 겪었던 사건의 경우엔 동네 경찰일 수도 있고, 한국에 들어오려는 난민신청자들에게 출입국항에서 난민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일수도 있겠지요.

제가 자전거도독으로 몰렸던 상황에서 일본 경찰들은 저의 ‘체류자격’을 묻더군요. 저의 경우와 한국에서 난민화를 겪는 사람들의 처지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있습니다만, 사실 타자에 대한 상상력과 이해의 결여가 얼마나 부당한 권력을

93 작동시키는지 생각해 보면 두 경우를 넘나드는 공통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제송환과 무기한 구금이라는 한국정부의 법적인 조치는 사실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국의 출입국항과 외국인보호소는 오히려 법이 유예되는 무법(無法)/비법(非法)지대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정부 당국이 양산하는 모호한 말들은 난민심사과정에서 공무원들을 초법적인 권력의 자리에 앉히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국민의 안전 혹은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면 차별과 혐오까지 서슴지 않는 정서를 만들어 내는 가짜뉴스에 힘을 실어주는 동력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이 ‘난민법 악용을 막기 위해’ 난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바로 그 순간의 공적 발화(發話)가 난민법과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안이 개악(改惡)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입법 예고를 앞둔 이 법안들이 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난민들이 법을 악용할 것’이라는 한국 법무부의 전제는 난민에 대한 국가의 상상력과 법적 언어가 얼마나 궁핍하고 왜곡된 것인지를 스스로 드러내는 자충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난민’이라는 용어를 기각할 구실을 찾는 데에 주력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열어주는 가능성이 무엇인지를 자문해 보기 바랍니다. 강제송환과 무기한 구금의 순환을 멈추고, 배제가 아닌 다른 무엇으로 난민이 된 사람들의 슬픔을 이해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의 중요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난민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정상성이 무엇인지를 폭로하는 존재들이 아닐까요? 그들에게 가해지는 법적, 제도적, 사회적, 정치적 폭력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얼굴이자 우리의 야만입니다!

2019년 5월 8일

심아정 드림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

안녕하세요 장관님, 대한민국의 한 평범한 고등학생 조성수입니다.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독일 언론인 FAZ에 “평범함의 위대함”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하나 기고하셨습니다. 대통령의 기고문은 2016년 추운 겨울에 시작한 촛불 집회에 참석하여 사회의 정의를 외쳤던 저를 포함한 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포용적 세계질서를 실천하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평범함의 기회마저 박탈당한 난민들을 대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부의 난민법 개정안에는 ‘국가 안보에 위협’, ‘중대한 범죄’, ‘국가공동체에 위협한 존재’,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등 너무나도 모호한 개념들이 많습니다. 난민들에게는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를 행정집행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강제송환이 이토록 손쉽게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은 ‘포용’을 외치는 우리 정부의 정체성에 강한 의문이 들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난민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들에 너무나도 문제가 많습니다. 난민신청 접수할 수 있는 곳도 턱없이 부족하며 이에 대한 안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자가 전화를 2번만 못 받아도 2년을

95 기다린 난민 면접은 끝이 나버립니다. 난민에게는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에 인생이 달려있는 통번역 지원이 민간위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난민들에게는 소송비용 마련하기도 힘든데 이제는 소송제기 기간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난민을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3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가치들의 우선 순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민 이전에 시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민 이전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 모두 같은 사람 아닌가요? 그렇다면 저는 아무도 목숨을 구원받을 기회가 박탈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권리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명에 대한 권리 없이 다른 권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권은 전세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어야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최상위 권리로서 자리하고 있으며 이 권리가 침해당한 이들을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경제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프랑스의 Center for Natural Resource and Science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난민수용은 국가의 GDP와 실업률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또, 난민들은 내수시장 활성화, 인력부족 해소, 세수 증대 등 다양한 방면에서 국가의 경제에 기여합니다. 난민들은 우리나라 경제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은 수백만의 난민들의 외면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셋째, 사회의 안정성입니다. 난민을 수용하는 것이 맞는 일이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할지라도 반대하는 이들의 논리의 마지막 선상에는 난민들이 강간범, 살인자,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독일

96 등의 나라들을 보더라도 일부 언론들은 난민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무슬림들은 다 테러리스트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외국인 혐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물론 난민들 중에 범죄자가 아무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내 범죄율과 범죄의 양상을 보았을 때 난민범죄는 대한민국 국민이 저지르는 범죄와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난민을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어떻게 난민들에게 우리나라 법과 언어에 대해 교육을 제공할 것인가, 그들이 떨어진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움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함께 논의합시다. 함께 포용을 어떻게 실천할지 이야기합시다.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법무부 장관님과 우리 정부가 꼭 난민들 또한 평범한 시민들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편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9일
조성수 드림

97 30번째 편지
박진우

박상기 법무부장관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일을 배우고 있는 박진우라고 합니다. 친구들에게 편지 쓴 것도 참 오래되었는데 이렇게 막상 얼굴도 뵈지 못한 분에게 편지를 쓰려고 하니 막막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건설현장에도 여러 나라의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기에 현장의 이야기를 몇자 써보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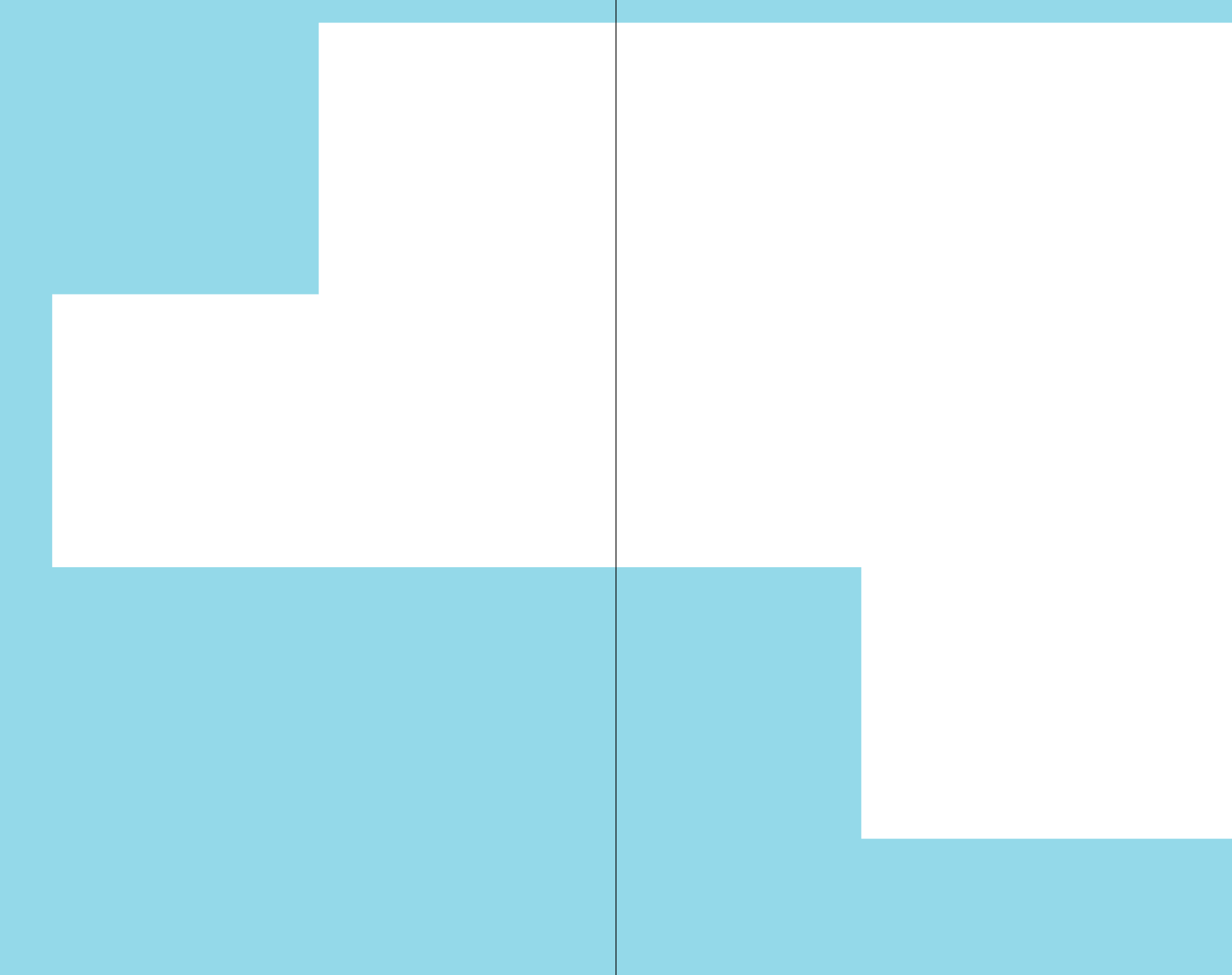
얼마 전에 폐기물업체에서 일하는 우즈베키스탄 친구인 L씨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게 힘들지 않냐는 질문에 고국에 있는 세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이 아이들 때문에라도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L씨를 보고 있으니 문득 제가 막 태어났던 80년대 중반에 동남아시아에서 건설이주노동자로 일했던 아버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네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거운 석재나 철근 등을 옮기는 일들은 대부분 이주노동자들의 몫입니다. 몽골,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많은 나라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만 수십 년 넘게 일한 고령의 한국인 건설노동자들도 이제 이주노동자 없이 건설현장이 돌아갈 수 없다며 그 필요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티비 뉴스를 보던 목수반장님이 말하길 이제 한국인구도 점점 줄어든다는데 누가 건설현장에서 일하겠냐며, 이주노동자가 더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200만 명이 넘는 이주민들이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이주아동, 난민 등 다양한 이름으로 한국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국사회의 이주정책은 강제단속, 장기구금, 고용허가 등 감시와 통제의 기반에서 조금도 변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짜난민”을 걸러내기 위해서 난민법을 개정한다구요? 그것이야말로 정말 개악이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인종차별과 혐오가 늘어날것입니다. 현 문재인 대통령 역시 6.25전쟁당시 함경도 흥남에서 내려온 피난민의 아들입니다. 전쟁과 테러를 피해서 먼 한국 땅까지 온 사람들에게 “테러리스트”, “가짜난민”이라는 인종차별과 혐오표현을 규제하지는 못할망정 더욱 낙인을 찍게 만드는 것이 진정 법무부가 해야 하는 역할인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10년도 훨씬 전에 명동성당 앞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출입국단속반직원에게 외쳤던 말을 인용해보고자 합니다.

“나도 빨간 피를 가진 사람이고 당신도 빨간 피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파란피를 가진 것처럼 잡아가려고 합니까? 우리도 똑같이 빨간 피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같은 사람입니다.” 비록 이 말을 외친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강제 추방되었습니다. 하지만 200만 명이 넘는 이주민이 살고 있는 한국사회는 뒤늦게라도 이제 저 노동자의 말에 답을 해야 합니다. 난민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무국적아동도, 법무부 장관님도, 저도 모두 빨간 피를 가진 사람임을 잊지 않고 법과 제도를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 5월 10일
박진우 드림



그래서
편지쓰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책에 담긴
서른 편의 편지는 시민들이
한국사회에 직접 내놓는
난민 이슈에
대한 대답이자,

한국의 난민보호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치적인 요구이기도 합니다.

서른 명의 시민들은 한 달간 매일 법무부 장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낮선 땅에,
모르는 언어에,
아는 이 하나 없는 곳에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 일상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일일 거라 생각합니다.

법이 라는 한자의 해제를 보면
논이나 밭에 물길을 내고
이어주는 것이라 배운 기억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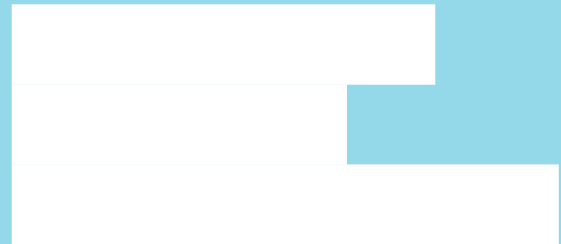
저는 법의 할 일이 부당한 폭력과 억압으로
‘자리’를 잃은 이에게 ‘자리를 돌려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님의 고민과 성찰 속에서
“혐오를 정당화하지 않는 선택”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우리의
평화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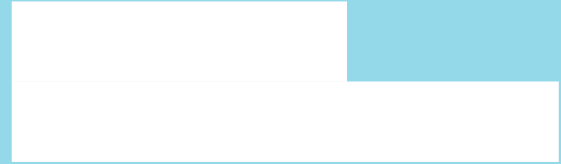
진정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평화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용기있는 결정
부탁드립니다.

세계 경제 속에서
어느새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미래세대의
자원을 끌어와 소비하며 삶을
누리고 있게 되었습니다.
세계 경제 속에서
이제 난민은 이벤트와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과 같은 삶을 유지하려면
지구가 3.3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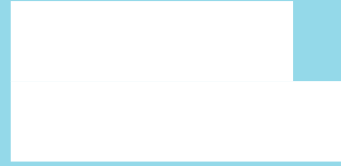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난민법은 난민들의
삶/지위를 보장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나쁜 말×10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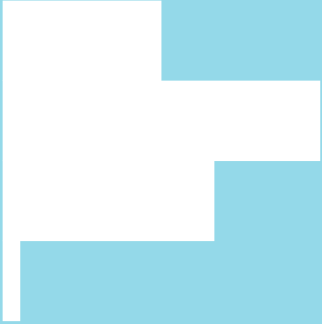
난민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밝은 모습이었고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한국의 방산 산업이
수출을 통해 성장하는
것과 세계의 내전 및
독재가 무관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을 찾는 난민들을
가해자로
규정하는 건
모순적이기까지 합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위상과 권위를 누리려면
그에 따른 책임 또한
마땅히 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취약한 사람들을
홀대하는 방법으로만이
보호될 수 있는 건가요.



사람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요.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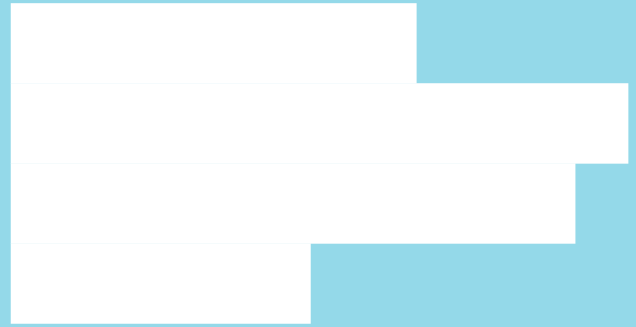
127

이번
난민법 개정은
이에 대한 반성이
담겨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난민을
잘 내쫓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난민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난민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앞장서서 만들어 낸
지옥의 희생자입니다.



크로포트킨이었지요.

132

“법은 힘센 자의 권리다”라고
말한 사람은.

모든 불빛에 주인이 있다고,
그래서 문을 걸어 잠글 수 있다고
주장하는 기능을 가진 게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133



난민법이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난민의 이야기를

134

국민에게
전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135



우리와 난민은 하나이고,
우리는 서로 도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법무부의 역할은
난민들을 추상적 범죄
집단으로
일반화하거나
검열,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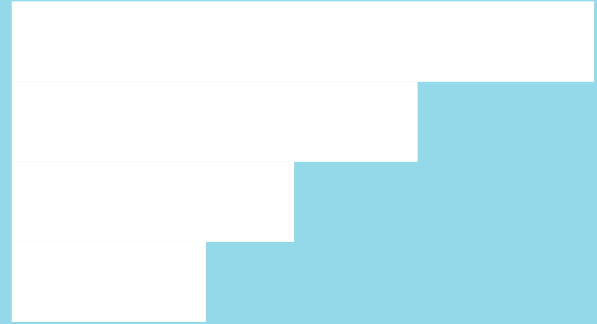
난민 개개인들의 필요한
삶의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는 일도 포함됩니다.

누군가의 권리를

‘난민이라는 이유’로
제한할 수 있는 사회는,
다른 누군가의 권리도 어떠한 다른
이유로 제한할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난민신청인에게
비인간적인 조처를 가할 수 있는 사회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제하며
내 존재를 긍정하는 것이
얼마나 오래갈 수 있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저는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146

147

저는 언어의 벽에 막혀서
자기 이야기를 전하지 못하는 슬한
사람들을 만나 봤습니다.

저는 그들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삶을,
한국에 오기까지
그들의 여정을
선불리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타인의 아픔에
침묵하지 않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을 뻗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또다시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자신의 삶을 지키려 위험을 감수하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다시 올라가미를
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의 난민인정을
도운 것을 계기로

154

155

저는 더 이상 난민이 남의 일이 아니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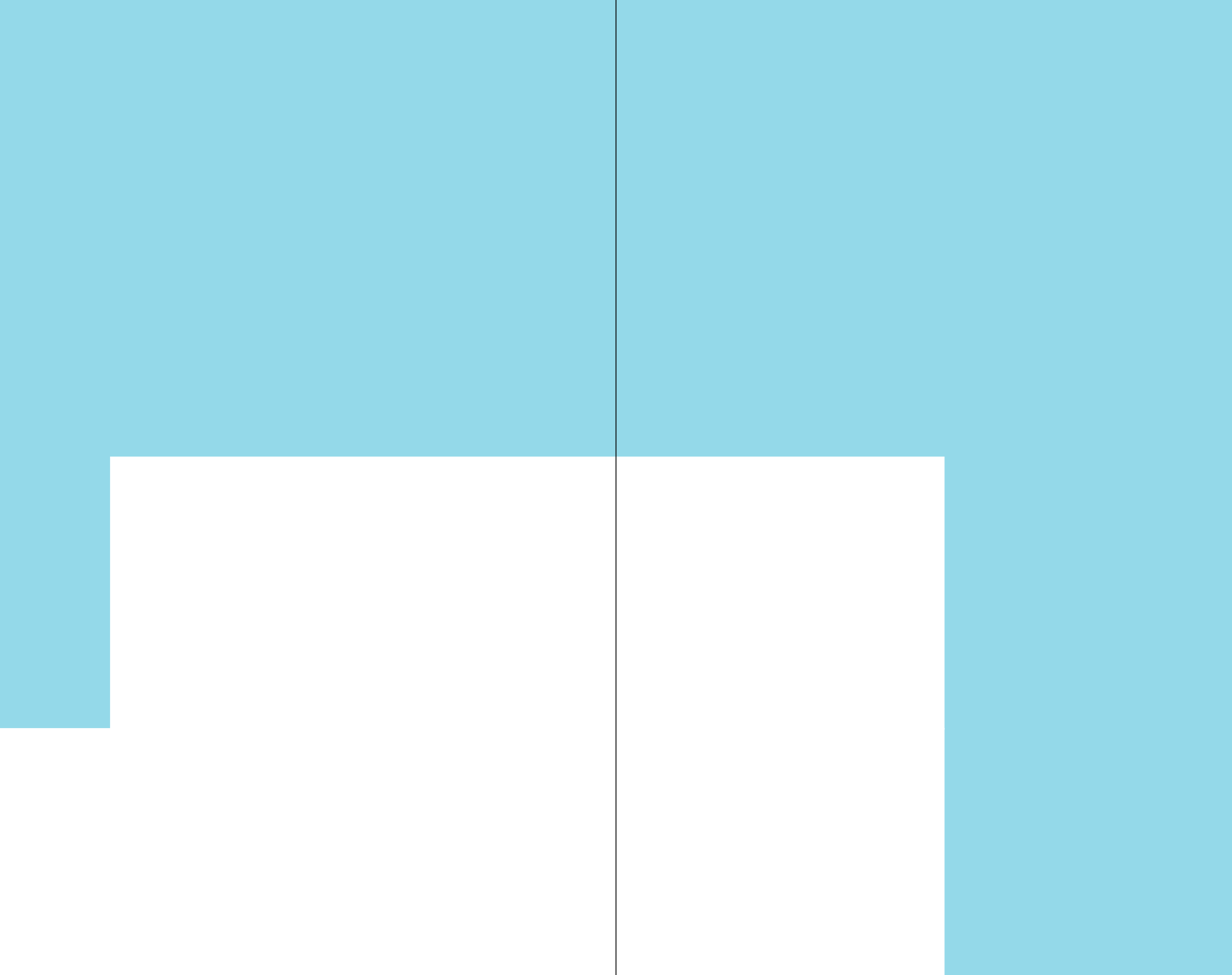
누구든 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결코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난민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지금 우리
사회의 태도가
과연 이성적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한국은 1992년 국제 난민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2013년 7월 아시아 최초로 난민에 대한 권리 보장과 처우개선을 법률로 규정한 국가입니다. 그러나 난민 수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탓에 여전히 난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최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를 통해 한국 사회에 만연하게 퍼진 난민을 향한 혐오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해 5월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들의 난민 신청 이후 상황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난민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종식 시켜야 한다는 것과 공정한 난민심사 절차의 부재, 극도로 낮은 난민 인정률, 불인정사유서가 여전히 한국어로만 고지되는 점, 절차에 대한 안내가 부재한 것, 재정착 난민 선정의 불공정성 등 구체적인 사안을 짚어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한국에 던져진 국제사회의 우려는 한국 사회 난민 인권의 현주소를 짚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예멘인 484명은 제주출입국과 외국인청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의 체류지를 제주로 제한하고 예멘을 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그 후 484명 중 2명을 난민으로 최종 인정, 412명에게는 인도적 체류 허가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56명의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는 불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161 이 과정에서 이슬람 문화권에 대한 오해와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사회 혼란을 부추기면서 난민 추방 요구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여러 건 올라왔습니다. 난민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면서 국회의원들도 너나 할 것 없이 관심을 보였지만, 여기에 한국사회 난민인권의 현 상황에 대한 고려는 없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난민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정안은 한국 사회 난민의 현실뿐 아니라 국제사회 속 한국의 위치를 외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의 의도와 난민 보호의 원칙은 보이지 않습니다. 개정(改正)안이 아니라 개악(改惡)안이라 불리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한국에 왔음에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국경에 갇힌 난민들은 언제쯤 한국 사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난민인권센터는 국회 난민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네 편에 나누어 살펴볼 예정입니다.

1. 조경태 ‘난민법 폐지, 난민의 흔적을 지워라’

(자유한국당, 대표발의)

「난민법」을 폐지함으로써 난민인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7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 문제로 온 나라가 불안에 떨고 있다. 어떤 난민보다 우리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며 난민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 의원은 “제주 무비자 입국 제도와 난민법 시행으로 대한민국은 사회적 수용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난민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급격히 늘어난 난민 신청자와 허술한 제도로 각종 범죄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있어 국민들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난민법을 폐지함과 동시에 의료급여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절차법에 ‘난민’이 들어간 조항을 전부 삭제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162

그러나 한국을 포함하여 난민협약에 가입한 142개국 중 협약을 탈퇴한 국가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청와대 역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사증 제도에 관해 부작용도 있지만,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면서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제사회 속 한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면서까지 협약을 탈퇴할 게 아니라면, 난민법 폐지 제안은 단순한 소동에 불과합니다. 협약에 따라 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는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제안은 무엇을 위한 걸까요?

2. 김진태 “난민신청은 한국 밖에서, 인정자만 입국”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7월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인 SNS에 “난민신청은 대한민국 밖에 있는 한국공사관, 영사관, 재외공관에서만 하고 인정받은 사람만 입국하게 하자”는 사실상의 국내 난민 인정 절차 폐지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난민협약이 난민신청자를 보호하라는 것이 아니”라며 “정부는 난민 신청자들을 모두 강제 퇴거시키고 난민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난민 인정을 받아야 난민이지, 아직 신청 중인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난민법 개정안에 실었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난민 인정자, 인도적특류허가자, 재정착희망 난민의 정의 조항을 모두 삭제해, 애초에 ‘난민’이 ‘난민 인정자’만을 의미하도록 하고 난민 인정을 중단·배제할만한 사유가

163 있으면 ‘난민이 아니니 강제 송환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 이 강제송환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난민은 타국에서 난민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난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엔난민기구가 정한 난민 지위 인정기준에 따르면, 난민협약이 정의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그 즉시 협약상의 난민이 됩니다. 이는 필요적으로 해당인의 난민 지위에 대한 공식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발생하는 것으로, 해당인의 난민 지위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난민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난민인 것이 아니라, 난민이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국제사회는 1951년 채택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최근의 발생한 다양한 난민 상황들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보충적 보호제도의 운영, 난민 글로벌 컴팩트(GCR, Global Compact on Refugees)를 채택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며 난민 인권보장을 모색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난민협약이 아니더라도 강제송환은 국제관습법상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2조 제4항을 보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난민 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가 끝나지 않은 경우 송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가입한 고문방지협약을 보면 난민이 아니더라도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는 강제송환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난민을 피하고 싶다’는 근시안적 제안에 불과합니다.

난민의 인권은 법이 없다고, 제도가 현실을 포용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해서 배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호할 제도가 없다고 난민의 존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현재 난민법 개정안은 애초 의도와 보호의 원칙은 온데간데없이 배제, 제한하고 처벌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난민신청은 모두의 권리입니다. 난민에게는 사람의 권리가 있고, 한국은 난민 인권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제주 예멘 난민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면서 국회의원들도 너나 할 것 없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난민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정안은 한국 사회 난민의 현실뿐 아니라 국제사회 속 한국의 위치를 외면하는 내용으로 구성돼있습니다. 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의 의도와 난민 보호의 원칙은 보이지 않습니다. 개정(改正)안이 아니라 개악(改惡)안이라 불리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난민신청은 모두의 권리입니다. 난민에게는 사람의 권리가 있고, 한국은 난민 인권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권리보장이 원칙이고 제한과 처벌은 예외가 되어야 하지만, 이 법안들은 난민을 ‘예외의 상태’에 놓인 ‘예외적 존재’로 내몰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한국에 왔음에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국경에 갇힌 난민들은 언제쯤 한국 사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1. 난민심사, 핵심은 빨리빨리가 아니다!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 - 1차 심사 3개월 안, 이의심사도 3개월 안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 1차 심사 3개월 안, 이의심사도 3개월 안
 이연주 바른미래당 의원 - 1차 심사 2개월 안, 이의심사도 2개월 안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 -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이의신청
 했던 사람은 30일 내에.

현행 난민법은 1차 신청 심사를 6개월 안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6개월에 한해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17년 말 기준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신청자들은 평균 7개월을 기다려 1차 심사 결과를 받습니다. 난민신청자들은 난민신청 후 생계와 의료, 자녀의 교육 등 삶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1차 신청 후 이의신청심사, 법원 절차를 포함하여 3~4년이나 되는 심사 기간은 고통과 불안의 시간입니다. 길어지는 심사 기간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최근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심사 기간이 줄어들어 막막한 기다림의 시간도 줄일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숫자 하나 바뀐다고 상황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난민신청 현황은 총 3만2626건입니다. 2016년 7541건에서 2017년 9942건, 2018년 11월 1만5143건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직제상 난민심사관 등 난민전담공무원은 39명에 불과합니다. 1차 난민심사에 평균 10.4개월, 이의신청 심사에 9.9개월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사관 한 사람이 200~300건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난민심사는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심사 담당자는 난민신청자의 표면적인 난민신청 사유 외에도 신청자에게 박해에 대한 공포가 있게 한 사회적, 환경적 상황을 검토하고 미래의 박해위험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삶을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심사관이 한 해 수백 건의 면접을 해야 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면접은 예·아니오 식으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실한 면접 이후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는 불인정통지를 받고 탄식해야만 했습니다.

난민 심사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지만, 대한민국의 난민 심사 공무원은 잦은 순환 보직으로 인해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추기 쉽지 않습니다.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 있는 전문가가

166

167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전문성을 키워줄 교육 또한 미비합니다. 2017년에는 20시간의 교육 및 간담회, 이틀간 진행된 역량 강화 워크숍, 매년 1회 진행되는 난민심사관 양성과정이 집합 교육방식이 전부였습니다.

일찍이 난민제도를 운영해온 다른 국가들은 어떨까요? 유럽연합은 유럽연합회원국, 노르웨이 및 스위스 전역의 난민전담 공무원과 이외의 비호관련 업무담당자를 위해 2012년부터 유럽국제보호지원사무소(European Asylum Support Office_EASO)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난민 심사와 보호관련 전문내용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이고 공통된 내용을 이수한 뒤에는 업무영역에 맞춰 더 높은 수준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또한, 난민 보호와 관련돼 새롭게 떠오르는 이슈를 연구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는 인신매매를 다루는 모듈을 신설했습니다. 세분된 내용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시간도 한국 전담 공무원들이 받는 교육 시간보다 깁니다. 면접 기술 모듈과 판단 및 결정 모듈을 예로 들면, 각각 5일간의 e-러닝 세션, 2일간의 면대면 세션을 마치도록 했습니다.

어쩌면 ‘39명의 심사관만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가능하겠나’는 시민사회의 우려는 당연할지 모릅니다. 2018년에는 면접 심사과정에서 아랍 출신 난민신청자들이 허위통역으로 억울하게 탈락했습니다. 당시 난민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허위로 작성된 난민면접 조서로 불인정 결정을 받았던 피해자들의 손해를 보상하고 구제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난민심사에 대한 불신이 근거 없이 많았다는 것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난민 심사를 빠르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빠른 심사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심사 절차의 제대로 된 이행,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정직하고 꼼꼼한 심사입니다. 인력 부족은 양질의 심사도, 빠른 심사도 불가능하게 합니다. 인력과 자원이 없어 난민 불인정통지사유서도 한글로만 제공되는 게 현실입니다. 인력충원이 먼저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2. 강석호 “난민심사를 위한 사전 난민심사 도입”

“진짜 난민은 보호하고 가짜 난민과 브로커는 엄벌하기 위해서는 난민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심사기준은 강화해야 한다.”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7월 난민 브로커 및 가짜 난민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강 의원의 발의한 난민법 개정안은 난민심사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가짜 난민에 대한 처벌과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난민으로 심사할지를 사전 심사해서 ‘진짜 난민’만 난민 신청을 하게 만들겠다는 안입니다.

그런데 공항과 항구에서는 이런 절차가 오래전부터 운영됐습니다. 2013년 난민법이 시행되면서 한국에 체류하고 있지 않더라도, 공항이나 항구 등 출입국항으로 들어오면서 난민 신청을 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이때는 난민 심사를 받을지부터 심사받습니다. 일종의 사전 심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문제는 이 절차들이 난민 신청자를 강제 송환할 수 있는 제도로 오용되면서, 이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가 시리아를 주목하고 연대의 손길을 내밀던 2015년, 한국에서는 ‘시리아 난민’ 28명이 인천공항에 갇혀 7개월을 보냈습니다. 난민법에 따라 공항에서 ‘난민신청 의사’를 밝혔지만, ‘명백한 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경의 틈에 꼼짝없이 갇혔던 것입니다. 난민들은 숙식이 제공되지 않는 송환대기실에 ‘수용’돼 송환의 두려움과 구금 사이에서 고통받았습니다.

169 최근 앙골라 국적자에 대한 인종차별과 협박, 성폭행 등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 전 재산을 걸고 난민이 되기로 한 ‘인천공항 46번 게이트의 가족’ 사례는 난민을 대하는 국가의 태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항 속 난민의 상황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7년 출입국항 사전심사를 통과해 난민심사에 부처진 신청자 비율은 10.7%(2013년 59.3%, 2016년 32.6%)였습니다. 열 명 중 한 명만이 회부 결정을 받아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불회부 결정을 받은 90%의 난민은 이의 신청도 불가능해 본국 강제 송환과 소송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부분 소송을 택하는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서적·신체적 건강의 위협을 받으며 출국대기실에서 장기 체류해야 합니다. 현재 법무부는 불회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당사자에게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유로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난민법이 만들어진 이래 꾸준히 제기되었던 법의 공백입니다. 사전심사 자체가 신청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과 난민 심사를 할 공무원이 부족해 본 심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강석호 의원의 ‘난민 심사 전 심사 제도’ 개정안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난민법 폐지안을 비롯한 총 6건의 난민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난민 보호의 기본 취지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난민 보호의 원칙은 온데간데없이 배제·삭제·처벌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어버린 개정안들. 난민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법무부는 난민법 개정안을 통해 난민 인정 절차를 남용하는 이른바 ‘가짜 난민’을 단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난민도 우리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존중받아야 하며, 한국은 이들의 인권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난민신청자가 공정한 심사기회를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급한 개정을 막아주세요.

작년 5월 이후, 제주 예멘 난민에게 쏠린 사회적 관심에

국회의원들도 너나 할 것 없이 관심을 쏟았습니다. 난민법을 개정하자는 제안이 쌓였습니다. 그러나 난민법 폐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개정안들은 한국사회 난민의 현실뿐 아니라 국제사회 속 한국의 위치를 완전히 외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대책 없이 내놓은 제안들은 개정(改正)안이 아니라 개악(改惡)안이라고 볼릴 만 한데요. 한국에 비호를 요청한 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난민법의 의도와 난민보호의 원칙은 온데간데 없이 배제하고 삭제하고, 제한하고, 처벌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의 권리보장이 원칙이고 제한과 처벌은 예외가 되어야 하지만, 이 법안들은 난민을 늘 '예외의 상태'에 놓인 '예외적 존재'로 내몰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한국에 왔음에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국경에 갇힌 난민들은 언제쯤 한국사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난민인정자의 삶은 돼지만도 못하다.” 한 난민인정자의 뼈아픈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난민인정을 받았음에도 한국사회 시민으로서의 삶은 커녕 하루하루 생존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에는 2018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람들은 총 936명¹이 있지만, 여전히 난민인정자의 정착을 위한 정책 운용은 요원하고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도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난민인정자는 딱 두 장 분량의 '안내문'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착을 위한 그 어떤 정보 제공도 받지 못합니다. 이 두 장의 안내문은 그마저도 난민법의 처우 관련 조항을 풀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법무부가 아닌 다른 정부부처에서 난민 인정자에게 제공 가능한 서비스 목록도 빠져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에 난민 처우를 전담하는 사무관이 있지만 재정착난민 업무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난민인정자의 처우는 뒷전이 되곤 합니다. 재정착난민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실무협의회가 진행되었지만 난민인정자의 정착을 논의하기 위한 난민처우협의회는 그동안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30명 가량의 재정착 난민을 위해 3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나 난민인정자 정착예산은 전혀 배정되어있지 않았으니 사실상 언어도, 문화도 다른 이곳에서 난민 인정자는 각자도생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알기나 한 걸까요? 난민 인정자의 처우 축소와 함께 신청자의 생계비 삭제, 교육보장 삭제, 특정난민신청자의 처우

1. 있으나 마나 한 신청자 생계비 제도

난민신청자의 생계비지급제도는 예산이 없어 제대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2017년에는 전체 대상자의 3퍼센트에게만 지급할 수 있었고, 신청자가 배로 늘어도 3년간 8억수준을 유지하던 생계비는 올해 2,500만원이상 삭감된 상황입니다. 지급기간은 법에 6개월로 정해져있지만, 예산책정은 법에 정해진 6개월이 아닌 3.5개월 기준입니다. 만 오천명이 넘는 신청자 중 500명 남짓에게만 지급할 수 있는 예산.

신청자들이 먹고 자는 정도의 기본적인 삶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취업허가라도 내 주어야 합니다. 난민들이 스스로 생계를 해결할 수 없게 만드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난민신청자를 짐 취급하는 태도는 모순 그 자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난민신청자들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선별 지급되던 생계비를 삭제한다고요? 논쟁을 잠재운다는 명목으로 생존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난민들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도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난민신청자에게 주거와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거수당의 형태이든, 정부가 제공하는 공동주택의 형태이든 말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주거수당과 별개로 1인 기준 한달 약 44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하여 신청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독일의 경우 주거지원 및 건강보험료 지원과 더불어 약 69만원, 영국의 경우 23만원), 불인정된 난민신청자에게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내용의 복지를 제공합니다. 법적 지위가 다르다고 해서 필요한 삶의 조건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2. 난민신청자여도, 아동이라면!

한국도 가입한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나 그 부모,

173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 인종적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여부,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아동에게 이를 보장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난민신청자라는 이유로 그 자녀인 아동들에게 최소한의 교육조차 받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한국사회의 미래를 뿌리부터 뽑아내는 일입니다. 아동을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최선이익을 실현하겠다는 국제적 의지를 표현하는 UN아동인권선언에도 반합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았든 인정받기 전이든, 아이들은 무엇이든 배우고 친구들을 사귀고 미래를 꿈꿔야 합니다. 자국민의 이익이 먼저라는 허구의 구호로 아이들의 미래를 뺏다니요.

작년 5월 이후, 제주 예멘 난민에게 쏠린 사회적 관심에 국회의원들도 너나 할 것 없이 관심을 쏟았습니다. 난민법을 개정하자는 제안이 쌓였습니다. 그러나 난민법 폐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개정안들은 한국사회 난민의 현실뿐 아니라 국제사회 속 한국의 위치를 완전히 외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대책 없이 내놓은 제안들은 개정(改正)안이 아니라 개악(改惡)안이라고 불릴 만 한데요. 한국에 비호를 요청한 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난민법의 의도와 난민보호의 원칙은 온데간데 없이 배제하고 삭제하고, 제한하고, 처벌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의 권리보장이 원칙이고 제한과 처벌은 예외가 되어야 하지만, 이 법안들은 난민을 늘 ‘예외의 상태’에 놓인 ‘예외적 존재’로 내몰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한국에 왔음에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국경에 갇힌 난민들은 언제쯤 한국사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1. 법무부가 운영하는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난민지원센터)

영종도에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라는 난민센터가 들어설 때, 시민사회에서는 난민을 외파로 수용하고 통제하는 방식의 제도에 반발했습니다. 애초에 한국사회에의 적응을 시설 안에서 진행한다라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오히려 난민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고립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애초에 센터는 난민신청자들이 6개월 머무는 동안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국제회의등을 주최하여 활용하겠다는 당찬 계획을 내놓았으나, 매년 연이용률 60%이하,

175 국제회의는 전혀 열리지 않는 등 그나마 부족한 난민예산을 갹아먹는 주범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입주 난민들의 출입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외출을 위해서는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2018년 7월에는 거주 중이던 난민신청자들이 외출허가증을 발급 받았는데, 난민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여할 계획인 것이 알려지자 외출허가가 철회되었고, 그럼에도 외출한 일부 난민신청자들은 ‘무단 외출’을 이유로 벌점을 부과 받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관리’받는 곳입니다.

2. 거주지 제한은 또 다른 국경을 만드는 일

몇몇 의원들은 난민을 인정받기 전까지 신청자들을 위주거시설에 수용 또는 신청지 관할구역에서만 체류할 수 있도록 제한하자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난민신청자를 ‘보호’한다는 허울도 없이 노골적으로 ‘불법체류와 범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을 제안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유민봉 의원

“난민신청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되면 관리가 어려워 향후 불법체류의 가능성과 범죄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고”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의 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관할구역으로 체류지를 한정
-이탈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언주 의원

“장기간의 난민심사기간과 난민인정 결정 전 자유로운 이동으로 불법체류 및 범죄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법무부장관이 설치 및 운영하는 난민주거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함

일단 법무부장관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센터는 연 수용인원이 176명 남짓으로 신청자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데다가, 체류지를 관할구역으로만 한정할 경우 단순하게는 신청자들이 생계 유지의 방법을 찾는 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취업허가 이후에도 단순노무직에만 종사하며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신청자들에게 체류지 제한은 또 다시 생계유지수단을 봉쇄하는 조치와 다름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탈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은 한국 사회 안에 또 다른 국경을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타국에 비호를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는 선언아래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아야하는 주체로 한국에 온 난민신청자입니다. 난민신청자를 노골적으로 잠재적 범죄자로 특정하여 이동권을 제한하는 것은 인종차별입니다. 난민을 범죄와 연관시키는 근거없는 제안이유도, 부끄러움없이 이러한 제안을 내놓는 것도 놀라울 따름입니다.

왜 난민들은 한국 안에 있지만 늘 국경에 서 있는 듯이 조사와 감시, 그리고 구금과 처벌에 노출되어야 할까요? 이미 이주민, 난민들은 ‘동향조사’라는 이유로 과도한 관리감시, 가택조사, 체류제한 등의 사생활 침해를 겪고 있습니다. 난민들이 한국사회에서도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영위하고, 사람다운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감시관리’가 아닌 ‘권리보장’으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난민법은 어떻게 가고 있을까

한국은 1992년 12월 3일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 난민협약이 1993년 3월 3일, 난민의정서가 1992년 12월 3일에 각각 발효되면서 협약상의 난민보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1993년 12월 10일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심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1994년 7월 1일부터 난민심사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경관리, 외국인의 체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안에서 난민의 인권이라는 가치는 제대로 발현될 수 없다는 한계가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에서 계속해서 지적되었다. 한국이 난민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난민인정 절차의 신속성, 투명성, 공정성에 대하여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왔으며, 난민신청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봉쇄되어 있고, 난민인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등 난민 등의 처우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¹

2004년 거의 유일한 난민지원단체였던 사단법인 피난처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연구로 ‘국내 외국인난민 인권실태조사 보고서’를 내면서 ‘난민인정과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황우여의원이 당시 대표로 있었던 국회인권포럼에서 ‘한국의 난민실태와 난민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곳에 참석한

1 난민법 제정이유

179 사람들 중심으로 2006년부터 난민활동가와 변호사들이 난민지원네트워크 월레모임²을 꾸려 난민법 제정안을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난민법 제정운동을 추진하였다. 법무부도 당시 난민실을 중심으로 2005년 9월 난민법제·개정위원회를 만들어 난민법 안을 만들었고, 이는 난민법 초안을 만드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09년 입법청원을 하였고, 같은 해 5. 25. 황우여 의원이 대표로 국회에 발의하였다. 그리고 약 3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실 방문, 전문위원과 발의 의원실 보좌관들과의 면담,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한 의견개진, 대표발의자인 황우여 의원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난민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분명한 의지 등의 노력과 상황으로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12년 2월 10일 독립된 인권법으로서의 난민법이 제정되었다.³

당시 법무부는 “난민인정과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 시행하는 것은 난민협약에 가입한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 최초”라고 설명하며 난민법 제정을 대내외적으로 큰 업적으로 여기고 홍보하였다. 2013년 6월 법무부에 난민과가 신설되었고, 7월에 난민법이 시행되었으며, 9월에는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완공하였고, 10월에는 한국이 유엔난민기구 집행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되기도 하였다.⁴ 한편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정된 난민법은 제정 과정에서 타협과 협상을 통해 처음 시민사회에서 마련한 법안에서 많은 부분 수정이 되었고, 시민사회에서는 제정 당시부터 이와 같은 수정안에 대한 문제제점에 대하여 지적하였다.⁵ 대표적으로 출입국항 난민신청에 관한 조항(난민법 제6조), 간이절차 규정(난민법 제8조 제5항), 인도적체류자와

2 현재 난민인권네트워크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

3 이호택, ‘난민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 김종철, 김재원, ‘난민법 입법과정과 제정법의 의의 및 향후 과제’에서 재인용

4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축조식 난민법 해설’ 발간사

5 김종철, 김재원 앞의 글 등

난민신청자 처우 규정 미비(난민법 제39조-제44조) 등이었고, 실제로 이와 같은 우려는 난민법 시행 후 거의 바로 현실적인 문제로 드러났다.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의 의사를 밝힌 경우 난민심사로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종의 적격성 심사절차는 사실상 정식 난민심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고, 이의신청 등 신속한 구제절차의 부재와 열악한 처우가 여러 사례를 통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또한 2014년부터 한국에 입국한 시리아 난민에 대해 일률적으로 인도적체류자의 지위를 부여하면서 인도적체류자의 불안정한 지위와 기초생활 보장이 전혀 되지 않는 처우의 문제점도 수면 위로 올라왔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국내 인도적체류허가 난민의 실태조사 보고서(2015),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 실태조사 보고서(2016) 등을 통해 사회에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려 2015년-2016년 사이 출입국항 제도를 개선하는 안, 인도적체류자 처우를 개선하는 안, 난민심사과정에서 당사자 권리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안 등의 난민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⁶ 이와 같은 난민법 개선의 움직임들은 2015년 말 정부의 테러방지법 제정과 통과에 시리아 난민이 이용되는 등 국가안보 프로파간다에 휩쓸려 통과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리고 난민법 시행 5주년을 맞은 2018년 7월, 예멘 난민 제주입국을 계기로 ‘난민’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사회적 여론을 명분삼아 일부 국회의원들은 난민법 폐지 내지는 개악의 카드를 들고 나섰다. 난민법 폐지안에서부터, 강제송환을 행정청의 재량 하에 용의하게 하는 안, 난민심사회부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자는 안, 난민심사기간을 줄이자는 안, 난민인정자 처우 축소하고 난민신청자 생계비 및 교육보장

6 원혜영 의원, 홍일표 의원, 홍익표 의원, 박명재 의원, 이자스민 의원 등 각 대표발의안 참고

180

181 삭제하자는 안 등 자국민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기존의 난민법의 목적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후퇴시키는 여러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⁷

그리고 이 상황을 기회로 삼아 법무부는 난민법 전면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 재신청 등 일부 난민신청자에 대해 정식 난민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적격성 심사를 거치게 하고 부적격결정을 받은 경우 불복기회를 제한하고 출국조치를 하는 것, 그리고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신청’이라는 분류를 만들어 마찬가지로 불복의 기회를 제한하고 출국조치를 하는 것 등 난민심사를 받을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과 2) 강제송환의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일정한 경우 강제송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만드는 것, 3) 출석요구 2회 불응시 난민신청 철회를 간주하고, 난민심사 과정에 위변조, 허위서류 제출시 형사처벌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난민심사과정에서 난민신청자의 협조 의무를 강조하고, 불이행시 당사자의 불이익으로 돌리거나 형사처벌 규정 등으로 규율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이다. 난민인정자의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근거규정 마련, 인도적체류자의 취업지원 근거규정 마련, 난민신청자의 취업허가 확대 등 처우에 있어서는 일부 개선된 안을 내놓고 있지만, 강제송환금지원칙과 공정하고 충실한 난민심사기회의 보장의 측면에서는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법안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법원 등 관계부처들에서도 정부의 난민법안에 대해 우려의 의견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사실 난민법 시행 이후 불안정한 국제정세에 따라 난민신청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난민심사 적체가 심화되면서 법무부는 인적·물적 인프라의 확충과 심사제도를 효율적으로 잘 갖추는 방안은 제쳐두고 이미 어떻게 하면 심사로의 유입을 막을 수 있을까에

7 조경태 의원, 이언주 의원, 김진태 의원, 강석호 의원, 송석준 의원, 함진규 의원 등 각 대표발의안 참고 (출처: <https://nancen.org/1963> [난민인권센터])

182
혈안이 되어 있었다. 법무부는 2014년부터 문제가 제기된 2017년 초반까지 심사적체 해소TF를 운영하여 간이면접 대상자(난민법 제8조 제5항) 규정을 폭넓게 적용하여 난민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을 자의적으로 구체화하여 신속심사를 지시하였다. 이 대상자에는 ‘족장승계, 컬트’ 등 대표적으로 난민사유에 해당하는 유형도 포함되어 있으며, 난민제도를 남용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대상자들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자의적으로 충실한 난민심사의 기회를 박탈하고 부실한 심사를 진행해왔다. 이것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난민신청자들의 난민면접조서가 조작되는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심사적체 해소TF가 문제시되자 이번에는 탈법적으로 재신청자 등 일부 유형의 난민신청자에 대해 ‘남용적 난민신청자’라는 낙인을 붙여 법적인 체류자격을 박탈하고, 출국기한 유예 등 ‘사실상 쫓아내지는 않아서 체류가 가능함’ 형태의 비정상적인 체류를 하도록 하는 심각한 체류제한으로 난민신청자들에게 출국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 법무부에 의해 면접조서가 조작된 피해자도, 예멘 출신의 난민신청자도 모두 ‘재신청자’라는 이유만으로 ID카드를 빼앗기고 법적인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의 심사를 대기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이 체류제한을 하고 출국명령을 내리는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법무부는 이와 같은 탈법적인 체류자격의 박탈과 심사기회의 제한을 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자신들의 위법한 관행들을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다. 난민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충실하고 공정한 심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할 기본적인 책임은 방기한 채로 ‘신속’이라는 미명 하에 난민에 대해 문을 닫고, 열심히 쫓아내기 바쁜 출입국의 실무관행에 정당성만 부여하는 법으로 전략할 우려가 매우 크다.

난민법은 어떻게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난센은 정부와 정치권의 거대한 난민법 개악의 움직임을 막는 것을 올해의

183 의제로 삼아 바위에 계란치기 하는 심정으로 여러 작은 활동들을 펼쳐왔다. 난민인권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 여기며 함께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힘을 모으기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시민들이 직접 자기의 언어로 자신의 이야기와 마음을 담아 법무부장관에게 편지를 쓰는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난민신청은 권리다’ ‘국경 속의 국경세우기를 멈춰라’ ‘강제송환금지원칙에 예외는 없다’ ‘하자투성이 난민법 리콜’의 메시지를 알리고자 움직였고, 여러 강연 등의 기회에 참여하여 한국의 난민법과 난민현안을 공유하고 토론하였다. 이주인권단체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등 다양한 진영에서 난민법 개악반대 의제로 먼저 연대의 손을 내밀어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난민인권네트워크와 함께 정부와 국회와의 소통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처음에는 소수의 사무국 활동가가 논의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점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 주제를 이야기 하고, 또 연대와 지지의 힘을 보여주었다. 가까이 있는 지인들에게 연명을 받아서 우편봉투에 소중히 보내주시는 서명용지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언젠가는 이 계란들의 힘이 바위를 가르고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정부의 난민법안은 추진은 아직 입법예고도 되지 않은 채 입안 당시의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최초라며 자랑스럽게 홍보했던 그 인권법으로서의 난민법이 계속해서 난민인권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더 잘 담을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나아가기를 바란다.

시민드림:

난민법 개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편지

초판 1쇄 발행 2019년

발간인

이슬

편집자

まっくろくろすけ

디자인

일상의 실천

펴낸곳

난민인권센터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1동 401A

연락처

02-712-0620

홈페이지

www.nancen.org

저자

김지은

김규환

문아영

이다은

이광문

박경주

김규리

김윤정

이다현

이상아

전예진

한나현

강이슬

홍세화

이민혜

해리

황정인

편세정

현민

최수근

김세경

김유찬

최하늬

신지영

김지유

임한주

우지원

심아정

조성수

박진우

김연주

이슬